

310.111
통147
C.2

가계조사항목분류집

2003. 1.



519869

차 례

I. 항목분류 원칙	3
II. 항목분류 체계	3
1. 총 수입	4
2. 총 지출	5
III. 항목분류 해설	6
1. 수입에 관한 사항	6
2. 지출에 관한 사항	14
1) 식 료 품	14
2) 주 거	40
3) 광열수도	42
4) 가구집기가사용품	44
5) 피복신발	54
6) 보건의료	59
7) 교 육	64
8) 교양오락	68
9) 교통통신	77
10) 기타소비지출	81
11) 비소비지출	87

< 부 록 >

1. 가 구 구 분 표	95
2. 산 업 분 류 표	98
3. 직 업 분 류 표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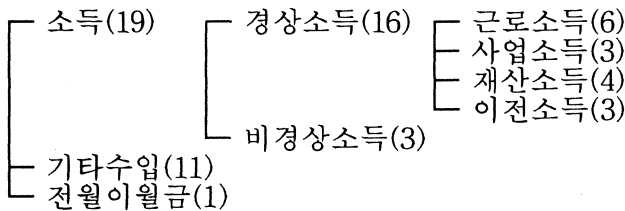
I . 항목분류 원칙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품목별 분류방식에 따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용도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현재 조사대상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및 가구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야 함

II . 항목분류체계

- 가계수지항목을 크게 총수입과 총지출로 구분하는데 각각의 분류체계와 분류항목수는 다음과 같음(총 296개)

○ 총수입(31)



○ 총지출(262)



- 자가·전세·보증부월세평가액(3)

-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수입과 지출로 분리됨. 수입의 총계를 총수입이라 하고 지출의 총계를 총지출이라 할 때 가구별로 총수입과 총지출은 일치하여야 함

1. 총수입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이나 가구에 들어오는 일체의 현금과 현물수입을 말하며, 이 총수입은 실수입을 나타내는 소득과 실수입이외의 수입을 나타내는 기타수입 및 전월이월금으로 구분됨

① 소득(실수입) : 실질적으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됨

② 경 상 소 득 :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비 경 상 소 득 : 복권탄금액, 경조소득, 퇴직금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가계의 입장에서 비경상소득은 경상적인 가계운영, 즉 소비지출 결정시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함

④ 기 타 수 입 : 실수입이외의 수입으로 저금찾은 것, 재산매각대금(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빌린돈 등과 같이 재산의 형태만 변화했을 뿐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수입을 말함

⑤ 전월 이월금 : 지난달말일에 가구에 남아 있던 현금으로 금월에서는 하나의 수입이 되며 실수입인 소득은 아님

- 반면, 발생빈도가 연 1~2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는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분류함(예 :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매(격)년 받는 성과급과 같은 변동상여금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상여금)으로 분류)

- 이전소득 중 발생을 미리 예측하지 어렵거나 발생확률이 평생 한 두 번 정도인 산재보험금 일시불·전세보증금 및 결혼자금 지원금·무상증여금·상속받은 재산은 비경상소득에 포함

2. 총지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이나 가구에서 나가는 일체의 현금을 말하며, 실지출을 나타내는 가계지출과 실지출이 아닌 기타지출 및 월말현금잔고로 구분됨

- ① 가계지출(실지출) :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하는 지출을 말하며,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됨
- ② 소비지출 :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을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직접 지출되는 금액을 말함
- ③ 비소비지출 : 소득세, 재산세 등의 제세금과 의료보험료, 퇴직기여금 등 공과금, 가계를 위해서 빌린돈에 대한 지불이자, 그리고 기타 벌금, 과태료 등과 같이 가구원의 재화와 서비스를 위해서 직접 소비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자산의 감소가 있는 지출을 말함
- ④ 기타지출 : 실지출이외의 지출로 저금, 재산구입대금(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등과 같이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재산의 형태가 변화한 것이거나 빌린돈 갚음 등과 같이 실질적인 자산의 감소가 없는 지출을 말함
- ⑤ 월말현금잔고 : 금월 말일에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다음달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금월로 보아 지출에 속하나 실질적인 지출은 아님

가계수지 항목분류 부호 기입

○ 기본 : 3자리의 숫자로 구성

○ 현물소득 : 4자리 숫자 = 지출부호(3자리 숫자) + 현물소득부호(1자리 숫자)

※ 항목의 내구성

○ ND : 비내구재

○ D : 내구재

○ S : 서비스

○ SD : 준내구재

Ⅲ. 항목분류표

1. 수입에 관한 사항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10-090	총수입		◆ 『소득』, 『기타수입』 및 『전월이월금』으로 구성
010-065	소득		◆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소득합계로서, 주로 노동과 사업 등의 대가로서 가계로 들어온 일체의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현물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010-046	경상소득		◆ 가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
010-018	근로소득		<p>◆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부업을 통해 얻는 소득. 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수당, 상여금 및 부업소득 등이 포함</p> <p>¶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총액)을 조사</p> <p>※ 봉급(급료):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또는 기본급여. 수당: 정한 급료 이외에 주는 보수. 상여금: 상여(賞與)로 주는 돈. 보너스. 부업소득: 주로 가계보조가 목적인 소득</p> <p>○ 봉급: 기본급 등</p> <p>○ 공통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등</p> <p>○ 특수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p> <p>○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p> <p>○ 기타수당: 특별상여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수당, 주택수당, 모범수당 등</p> <p>○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p> <p>○ 상여금: 보너스, 결산수당, 성과상여금 등</p> <p>○ 부업소득: 원고료, 강연료, 가정교사, 예체능교사, 신문배달 등 아르바이트</p> <p>× 사업장을 통해 지급받은 사회보장수혜 ⇒ 사회보장수혜(041)</p> <p>× 사업장내의 공제회, 상조회, 신용조합 등에서 받은 소득 ⇒ 기타 비경상소득(065)</p>
010-011	가구주소득		◆ 가구주의 근로소득
010	가구주급여소득		<p>◆ 가구주의 급여소득</p> <p>¶ 급여내용(급여, 수당, 부업소득)이나 지급액에 상관없이 1년에 12개월 내내 지급받는 것</p> <p>× 1년에 12개월 모두 지급받지 않는 가구주의 근로소득 ⇒ 가구주상여금(011)</p>
011	가구주상여금		◆ 가구주의 상여금
014-015	배우자소득		◆ 배우자의 근로소득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14	배우자급여소득		◆ 배우자의 급여소득
015	배우자상여금		◆ 배우자의 상여금
017-018	기타가구원소득		◆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017	기타가구원급여소득		◆ 기타가구원의 급여소득
018	기타가구원상여금		◆ 기타가구원의 상여금
020-022	사업소득		<p>◆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사업 또는 가내수공업으로 얻은 수입중에서 가계보조를 위해 가계로 들어온 수입 ¶ 사업장의 결산상 사업순소득이 아니라 가계로 전입된 소득만을 조사</p> <p>○ 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 ○ 피아노학원 등 학원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 ○ 슈퍼 등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 ○ 자판기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 ○ 가내수공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중 가계로 들어온 소득</p>
020	가구주사업소득		◆ 가구주의 사업소득
021	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의 사업소득
022	기타가구원사업소득		◆ 기타가구원의 사업소득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30-039	재산소득		◆ 재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030	이자소득		◆ 채권(국공채),저금(예금,적금),사채 등의 이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채권(국공채)이자소득 ○ 저금(예금,적금)이자소득 ○ 사채이자소득 ○ 기타이자소득
031	배당소득		◆ 보험,신탁,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실현되지 않은 주식시세예상차익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 ○ 보험배당소득 ○ 신탁배당소득 ○ 주식배당소득 ○ 기타배당소득 ×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수입⇒유가증권매각(073)
032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월세수입 ○ 주택임대소득 ○ 공장용지임대소득 ○ 광업권임대소득 × 부동산(토지,주택 등) 매각대금⇒부동산매각(074) × 부동산(토지,주택 등)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기타빌린돈
039	기타재산소득		◆ 부동산이외의 재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특허권대여소득 ○ 저작권대여소득 ○ 인세소득 ○ 기타재산소득 × 특허권,저작권,인세 등의 양도에서 얻은 소득->기타재산매각
040-046	이전소득		◆ 이전지급(移轉支給)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연금소득과 다른 가구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생활비보조 등의 사적보조를 포함한 가계보조금
040	공적연금		◆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속적(3회이상)으로 지급 받는 연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41	기타사회보장수혜		<p>※ 연금: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연금형태: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보훈연금:보훈연금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처나 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훈연금을 지급 ○ 체육인연금: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불을 받거나 일정액의 장려금으로 보상받는 것. × 퇴직금일시금 및 연금반환일시금 ⇒ 퇴직금및연금일시금(062) × 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 저축찾은금액(070) ◆ 040 항목이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가계보조금 등의 성격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면제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생계급여,2주거급여,3의료급여,4교육급여,5재산급여,6장제급여,7자활급여 등의 급여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노연금 및 교통비보조금,경로식당 무료 급식 환산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1요양급여,2휴업급여,3장해급여,간병급여,4유족급여,5상병보상연금,6장의비 등의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에서 현금급여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장애수당) ○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금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액 ○ 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금 ○ 65세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교통비보조금 ○ 결식아동(취학,미취학) 급식비 면제액 및 급식지원 환산액 ○ 기타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거한 사회보장수혜
046	사적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연간 3회미만)으로 받은 사회보장수혜 ⇒ 기타비경상소득(065) ◆ 다른 가구 또는 자산단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받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보조 성격의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보조 ○ 교육비보조 ○ 양육비보조 ○ 이혼(별거)수당 × 애경사에 대한 경조금 ⇒ 경조소득(061)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61-065	비경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연간 3회미만)으로 받은 생활비보조⇒기타비경상소득 × 개인연금저축⇒저축찾은금액(070) × 개인연금보험⇒보험단금액(071) ◆ 비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
061	경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의,조의 등 애경사(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장례식)를 이유로 일반사회의 관행에 의해 타 가구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은 현금,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현물 일체
062	퇴직금및연금일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장례식의 축(조)의금 × 기타축하금(입학 등)⇒기타비경상소득(065) ◆ 040 소득중 일시적(연간 3회미만)으로 받은 퇴직금 및 연금반환일시금 등을 조사 ※ 퇴직금: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연금반환일시금:가입자가 납부한 공적연금 및 이자·가산한 이자를 일시에 반환하는 성격의 소득 ○ 퇴직금 ○ 연금반환일시금(공적연금) × 매월 일정액을 지속적(연간 3회이상)으로 받는 연금소득⇒연금소득(040) × 일시적(연간 3회미만)으로 받는 사회보장수혜⇒기타비경상소득(065)
065	기타비경상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06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경상소득 ※ 장학금 주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단체로부터⇒기타사회보장수혜(041) └ 민간단체로부터⇒사적이전(046) 일시적⇒기타비경상소득(065) ○ 일시적인 소득:일시적인 이전소득(연금소득,사회보장수혜,송금보조(수입)) 등 ○ 보상비:이주대책비,수해복구비,자동차파손당한경우의 보상비,만기이전에 사고로 보험단 금액 등 ○ 축하금 및 조의금:경조소득을 제외한 돌,생일,입학,졸업,승진,약혼,결혼기념일 등의 축하금 또는 위문금 등의 조의금 ○ 증여금:재산상속(재산분배)금,전별금,사례금(팁),지참금,세배돈,다른 가구에게 주는 일시적인 용돈(삼촌용돈) 등 ○ 매각대금:폐품(빈병,폐지,의류매각,가구 등)매각대금,임시수확물(땃밭채소)매각대금 등 ○ 상금:복권당첨,경품권당첨,경마당첨,경륜당첨 등 ○ 습득금:습득금,습득물매각대금 등 ○ 정산금:세금환불받은금액,급여환불받은금액,출장비정산 등 × 퇴직금 및 연금반환일시금⇒퇴직금및연금일시금(062) ×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보상금⇒부동산매각(074) × 폐품이 아닌 귀금속,도자기 등의 매각⇒기타재산매각(075)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070-089	기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전화설치보증금, 이동전화기보증금 등) 환급⇒기타자산감소(079) ◆ 소득이외의 수입으로서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을 말함 ¶ 부동산, 주식 등의 시세차익 등 현금화되지 않은 것은 제외 ¶ 할부 및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도 포함 ¶ 보험, 적금해약 등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 ※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현금이 들어오는 한편으로 현금이외의 자산이 처분된 경우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현금이 들어오는 한편으로 부채가 늘어난 경우
070-079	자산감소로인한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달리 현금이외의 상품권이나 현물은 제외 ◆ 예금인출, 보험금수취, 부동산매각 등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킨 것
070	저축찾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이전에 사고로 보험탄 금액⇒기타비경상소득(065)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등)에 불입한 적금 또는 예금의 인출금 ¶ 개인연금저축도 포함 ※ 개인연금:개인이 재원을 출자한 사적연금 수취금 ○ 저축찾은금액(재형저축 등) ○ 직장연금 또는 민간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071	보험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보험회사 등)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만기지급금 ¶ 개인연금보험도 포함 ○ 보험탄금액 ○ 개인연금보험: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계약자 한 사람씩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
072	계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도래전 사고로 인해 보험탄 금액⇒기타비경상소득(065) ◆ 금전의 유통을 목적으로 조직한 모임(계)에서 지급순번이 되어 찾은 계지급금 ○ 계탄금액
073	유가증권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목도모으로 조직한 모임(계)에서 지급한 일시 증여금⇒기타비경상소득(065) ◆ 유가증권(채권, 신탁, 주식 등)의 매각대금
074	부동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매각대금 ¶ 토지수용에 의한 강제적인 매각도 포함 × 거주목적이외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광업권)의 매각대금⇒조사제외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075	기타재산매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재산(특허권, 저작권 등)이나 축재나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 보관하였던 보석, 귀금속, 골동품, 내구재 등의 매각대금 ○ 기타재산(특허권, 저작권 등)의 매각대금 ○ 축재목적용 재산(보석, 귀금속, 골동품, 내구재 등)의 매각대금 × 폐품매각⇒기타비경상소득(065)
079	기타자산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0-075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산의 감소 ○ 빌려준돈반음 ○ 예치금:보증금(전화설치보증금, 휴대폰보증금, 회원가입비 등) 환급 ○ 기타자산감소 × 정산에 따른 급여, 세금 등의 환불⇒기타비경상소득(065) × 전세, 월세보증금 받은 금액⇒부동산임대보증금(083)
080-089	부채증가로인한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매입을 위한 차입금, 할부및외상으로 구입한 금액, 월세(전세)보증금 받은 금액 등 부채의 증가를 발생시킨 것
080	부동산관계빌린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매입 및 임차를 위하여 용자받거나 빌린 돈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매입을 위한 차입금 ○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차입금 ○ 이주민주거대책비 중 집세(다시갚아야할경우) × 거주목적이외의 부동산(토지, 주택 등)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광업권)와 관계하여 빌린 돈⇒조사제외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기타빌린돈
081	기타빌린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0 항목 이외에 가계를 위해 빌린 돈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도 포함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 ○ 전·월세의 보증금 받은 금액 ○ 가계를 위해 빌린돈(부동산매입제외) ○ 마이너스(-)통장 ○ 가불금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료⇒부동산임대소득(032) × 부동산(토지, 주택 등)구입을 위해 용자 받은 돈⇒부동산관계빌린돈(080)
082	월부및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 또는 외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금액 ※ 할부: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2회이상 분할하여 상환할 것 외상: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일정기간 경과후 일시적으로 상환할 것

부 호	항 목 명	내 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089	기타부채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0-08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부채의 증가 ○ 보증채무 ○ 장학금(반납해야 하는 돈)
090-090	전월이월금		
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서 이월된 현금을 말함

2. 지출에 관한 사항

부 호	항 목 명	내구성	항 목 분 류 시 례 명
100-990	총지출		◆ 『가계지출』, 『기타지출』 및 『월말현금잔고』로 구성
100-912	가계지출		◆ 가계를 영위하기 위한 지출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
100-899	소비지출		◆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해 지불한 현금,카드 및 유가증권(상품권 등) 등 일체의 지
1) 식료품			
100-396	식료품	ND,S	◆ 음식으로 소비하는 식품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지출
100-120	곡물및식빵	ND	◆ 종자를 식용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주원료로 하는 식품 ※ 벼종류 - 미곡:쌀 맥류:보리·밀·호밀·귀리 등 잡곡:조·옥수수·기장·피·메밀·울무 등 콩종류 - 두류:콩,팥,완두콩 등
100	곡물	ND	◆ 가공하지 않은 미곡,맥류,잡곡 및 두류
	쌀		◆ 현미를 포함한 일체의 쌀(멥쌀) ¶ 쌀을 단순 가공처리한 영양쌀도 포함 ○ 쌀(멥쌀) ○ 현미 ○ 영양쌀:인삼쌀,상황버섯쌀,숙쌀 등 × 찰쌀⇒찰쌀(102) × 쌀과 쌀이외의 곡류를 혼합한 것⇒기타곡물(109)
	찰쌀		◆ 찰밥이나 찰떡의 원료가 되는 쌀(찰쌀) ○ 찰쌀 ○ 흑미(검정쌀) × 멥쌀,현미⇒쌀(100)
	보리쌀		◆ 보리를 일컬어 말함 ○ 보리쌀 ○ 가공보리:겉보리,쌀보리,납작보리(압맥),찢보리 등 ○ 할맥(보리를 세로로 2등분하여 자른 보리쌀) × 밀,호밀,귀리 등의 맥류⇒기타곡물(109)
	두류		◆ 두류(豆類)중 콩,팥을 조사 ※ 콩:대두(大豆)라고도 함 팥:소두(小豆)·적두(赤豆)라고도 함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110	기타곡물	ND	○ 콩:콩,쥐눈이콩,돌콩,작두콩 등 ○ 기타콩:강낭콩(채두(菜豆)),완두(豌豆),나물콩,동부(강두(康豆)) 등 ○ 팥:팥(적두(赤豆)) × 녹두,땅콩 등 기타두류⇒기타곡물(109) ◆ 100-10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곡류
	식빵및떡		○ 기타맥류:밀(메밀,호밀,밀쌀),호밀,귀리 등 ○ 기타잡곡:수수,조(좁쌀),옥수수,기장,피,울무 등 ○ 기타두류:녹두,땅콩 등 ○ 혼합곡류:오크세트(상표) 등 × 선식:혼합곡류를 갈아놓은 것⇒기타곡물가공품(129) ◆ 식사대용으로 소비하는 식빵 및 떡을 조사
	식빵		× 식사대용이 아닌 케이크 및 기타빵⇒기타빵류(320) ◆ 빵 중 기본적인 원재료(곡분,효모,식염,설탕,기름)만으로 가공하여 만든 빵
120	스낵빵	ND	○ 보리식빵,옥수수식빵,현미식빵,크로와상,불란서식빵,햄버거빵,핫도그용빵 등 ◆ 빵을 기본재료로 하여 햄,달걀,야채,과일 등을 넣어 조리한 것으로 식사대용의 조리된 빵
	떡		○ 햄버거 ○ 샌드위치 ○ 핫도그 ○ 스낵(조리빵)
	곡물가공품		◆ 쌀(멥쌀과 찰쌀)을 주원료로 하고,그 밖의 곡류로 만든 전통 식품 ○ 떡:가래떡,인절미,모찌떡,시루떡,찰쌀떡 등 ○ 한국전통식품:경단,약식 등 × 한식과자⇒한식과자(327) ◆ 곡류를 가루화한 것 또는 빵이외에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밀가루		◆ 밀의 배유 부분을 가루로 만든 것 ○ 천연밀가루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국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밀가루:강력분,중력분,박력분 등 × 밀이외의 기타곡물가루⇒기타곡물가공품(129) ◆ 면(麵)이라고도 함(조리된 면(麵)이 아님) ¶ 생것,삶은것,냉동한것 등도 포함 ¶ 육수,소스 등이 첨부된 국수류도 포함
	라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수류:가락국수,메밀국수,우동국수 등 ○ 우동류:우동,소바,소면 등 ○ 냉면류:냉면국수 등 ○ 중국국수:짜장국수,짬뽕국수 등 ○ 서양국수:마카로니,스파게티 등 × 제조과정에 있어서 양념,조리되어 보존가능한 상태로 가공된 인스턴트국수⇒라면류(122) ◆ 국수를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긴 유당면에 수프를 별첨한 인스턴트식품
	당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스턴트 라면류:봉지라면,용기라면 등 ○ 인스턴트 국수류,우동류,냉면류 등 ○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면 ○ 자판기에서 구매한 라면
	즉석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용기에 포장된 밥
	시리얼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반(상표),햅쌀밥(상표),즉석오곡밥 등 × 밥이외에 양념이 혼합된 도시락⇒김밥도시락(375) ◆ 여러가지 곡물로 만든 식사대용의 간편식품
	기타곡물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켈로그사 제품:콘프로스트,코코팜스 후르트리링,첵스 등 ○ 포스트사 제품:코코블,콘프라이트,각종 후레이크,스타베리 등 × 곡물가루류,선식류⇒기타곡물가공품(129) ◆ 120-125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곡물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믹스:밀가루에 곡분, 유지, 전분 및 각종첨가물 등을 배합하여 가정에서 간단히 2차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루류:튀김가루,부침가루,도너츠가루,핫케익가루 등 - 믹스류:쿠키믹스,식빵믹스,머핀믹스 등 ○ 곡물가루류:쌀가루,콩가루,옥수수가루,미숫가루 등 ○ 익힌곡류:즉석수제비,군옥수수,전옥수수 등 ○ 튀긴곡류:강냉이 등 ○ 곡물통조림:옥수수통조림,콩통조림,팥빙수용팥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130-140	육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류:메밀,녹두,도토리 등의 앙금을 풀처럼 쑀어 식혀서 굳힌 식품 ○ 선식류:주로 곡류에 야채류 등을 혼합한 영양식 ○ 곡물잼류:땅콩잼 등 ○ 기타곡물가공품:메주 등 × 엿⇒한식과자(327) × 머거본땅콩⇒스낵과자(330) × 곡물에 다른 식품을 혼합하거나(머거본땅콩) 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식품(팝콘)⇒스낵과자(330) ◆ 어개류이외의 동물 식용고기 및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인 가공을 한 식품 ¶ 새나 바다포유류 및 곤충류도 포함
130	생육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단 또는 냉동된 어개류이외의 동물 식용고기의 날고기 및 뼈,내장 등의 부속물 ¶ 냉동,세척,절단 및 불순물 제거 등 최소한의 가공된 것도 포함 ¶ 정육(뼈나 굳기를 따위를 발라낸 살코기)도 포함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생피 및 정육 ○ 쇠고기 및 쇠고기정육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의 생피 및 정육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정육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의 생육(생계) 및 도계 ○ 닭고기 및 닭고기정육 × 튀김닭=>기타육류가공품(149)
	기타생육및생육부속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13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생육 및 생육부속물 ○ 육지동물고기:개고기,말고기,염소고기 등 ○ 기타동물고기:고래고기,오리고기,타조고기,자라,상어 등 ○ 기타생육부속물:갈비,꼬리,내장,족발,머리,사골,선지,뼈 등
140	육류가공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 소시지 및 베이컨 등의 가공육, 소금에 절인 것, 간장에 절인 것, 말린 것 등의 육제품 ¶ 내용의 주성분이 육류인 통조림, 병조림도 포함
	소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돼지 따위의 창자에 다진 양념한 고기를 넣어 훈연시켜 만든 서양식 순대 ○ 비엔나소시지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햄및베이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크소시지 ○ 야채 등을 넣은 혼합소시지 × 햄소시지⇒햄및베이컨(141) ◆ 육류를 소금에 절인후 훈제(燻製)로 한 보존식품
	기타육류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햄 ○ 베이컨 ○ 햄소시지 × 햄통조림, 베이컨통조림⇒기타육류가공품(149) ◆ 140-14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육류가공품 ¶ 양념된 것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통조림:스팸(상표), 런천미트(상표), 베이컨통조림 등 ○ 삶은육류:삶은족발, 삶은돼지머리 등 ○ 양념된육류:양념곱창, 양념된불고기 등 ○ 튀긴육류:튀김닭, 마니커(상표), 바비큐 등 ○ 가공곤충류:메뚜기, 번데기(통조리포함), 벌의유충 등 ○ 말린육류:육포 등
150-158	낙농품	ND	◆ 어개류이외의 동물의 젖 또는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 조류의 알도 포함
150	우유	ND	◆ 우유 ◆ 소의 젖(우유) 및 소이외의 포유동물의 젖 ¶ 착향성분(과당, 커피, 색소, 비타민 등)을 넣은 것도 포함 ¶ 병, 깡통에 든 것도 포함
151	우유가공품	ND	○ 우유:원유(原乳), 생유 등 ○ 가공우유:저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농축우유, 가향우유 등 ○ 기타동물의 젖:산양유 등 ○ 우유음료: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바나나우유 등 × 발효유⇒요구르트(154)
	분유		◆ 원유(생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우유를 가루로 가공한 것 ○ 분유:스텝123(상표) 등 ○ 조제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등 ○ 특수분유:특수한 기능을 추가한 분유
	버터		◆ 우유속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켜 만든 것 ○ 버터:모닝버터(상표)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치즈		○ 가공버터:가염버터 등 × 버터유⇒기타우유가공품(157) ◆ 우유 속의 단백질을 응고·발효시켜 만든 것
	요구르트		○ 자연치즈:슬라이스치즈 등 ○ 가공치즈:경성가공치즈,연성가공치즈 등 ◆ 우유에 유산균 및 효모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
	기타우유가공품		○ 액상요구르트 ○ 호상요구르트 ○ 분말요구르트 ◆ 151-15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우유가공품
158	달걀및달걀가공품	ND	○ 연유 ○ 생크림:우유에서 비중이 적은 지방분만을 원심분리하여 만든 것 ○ 버터유:버터를 가공하고 남은 것으로 만든 것 ○ 유청류:치즈를 제조하고 남은 것으로 만든 것 ○ 유당: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만 분리하여 만든 것
			◆ 달걀 및 새의 알과 그것을 가공한 것 ¶ 통조림,병조림 또는 으갠 것도 포함
			○ 달걀,메추리알,오리알,타조알 등 ○ 달걀가공품:삶은달걀,달걀가루 등
160-190	어개류	ND	◆ 바다 및 하천에서 생산되는 고기 및 알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염장,건조,훈제 등의 가공한 식품
160	선어개류	ND	◆ 채취된 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가공되지 않은 어개류 ¶ 냉동,세척,절단 및 불순물 제거 등 최소한의 가공된 것도 포함
	갈치		○ 갈치
	명태		○ 명태,생태,동태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조기		○ 명태알 × 말린것(복어, 황태, 명태코다리)⇒복어(180)
	고등어		○ 조기:숫조기,참조기 등 × 굴비⇒굴비(181)
	꽁치		○ 고등어 × 간고등어⇒간고등어(184)
	물오징어		○ 꽁치 × 꽁치통조림⇒어개류통조림(193) ◆ ¶ 삶은 것 또는 데친 것도 포함
	가자미		○ 오징어:물오징어,갑오징어 등 × 마른오징어⇒마른오징어(183)
	병어		○ 참가자미,돌가자미 등
	임연수어		○ 병어
	삼치		※ 이면수(임연수어의 사투리) ○ 임연수어
	도미		○ 삼치
	생선회		○ 도미 ◆ 생선, 조개류 및 기타선어개 등을 회 떠서 구입하는 경우 ¶ 생선과 조개류의 모듬회도 포함 ○ 생선회:광어,농어,오징어,전어,멍게,해삼 등 ○ 모듬회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삶은 것 또는 데친 것도 포함 ○ 계:꽃계,민물계,왕계 등
	조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개류 ¶ 삶은 것 또는 데친 것도 포함 ○ 굴 ○ 조개류:대합조개,민물조개,피조개,홍합,가리비,꼬막,바지락 등 ○ 유사조개류:소라,전복,달팽이,고동,골뱅이 등 ○ 깎 것(조개살)
	기타선어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17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선어개류 ○ 바다어류:참치,전갱이,정어리,연어,대구,방어,꽂어,민어,복어,생멸치 등 ○ 민물어류:민물장어,미꾸라지,잉어,가물치 등 ○ 연체동물류:낙지,문어,새우(살),꼰뚜기,쭈꾸미 등 ○ 기타선어개류:해삼,멍게,미더덕 등 × 생선회로 먹기 위해 회로 떠서 구입한 선어개 ⇒생선회(173)
	염건어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을 위해 소금에 절이거나(염) 말린(건) 어개류 ※ 선어개를 소금에 절이거나(염) 말린(건) 어개류 ⇒염건어개류:복어,마른오징어 염건어개류를 공업적으로 보다 가공(양념)한 것 ⇒어개가공품:어포(복어포,오징어포)
	복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말린 상태의 명태 ○ 복어 ○ 명태코다리:반 정도만 말린 상태의 명태 ○ 황태:동결과 기화(氣化)를 반복한 상태의 명태 × 복어포(복어의 추가가공),노가리(명태새끼를 말려 가공한 것) ⇒어포(192)
	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에 절여 말린 상태의 조기 ○ 굴비 ○ 굴비썬걸이:반 정도만 말린 상태의 조기
	마른멸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치를 말린 것 ○ 마른멸치 × 생멸치 ⇒기타선어개류(179)
	마른오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오징어를 말린 것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190	간고등어		○ 마른오징어 × 물오징어 ⇒ 물오징어(165) × 양념하여 잘라놓은 오징어포 ⇒ 어포(192) ◆ 고등어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소금에 절인 것
	젓갈류		○ 간고등어 ◆ 모든 젓갈류 조사 ○ 새우젓: 오젓(5월), 육젓(6월), 차젓(7월), 추젓(8월), 동백젓(9~10월) 등 ○ 새우젓종류: 백하젓(흰새우), 토하젓(민물새우), 자하젓(분홍빛새우) 등 ○ 멸치젓: 멸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젓갈 ○ 명태젓: 명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젓갈 ○ 명란젓: 명태의 알로 만든 젓 ○ 창난젓: 명태의 내장으로 만든 젓 ○ 기타어개류젓: 까나리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황석어젓, 조기젓, 조개젓 등 ○ 기타어개류내장젓: 갈치속젓, 대구장지젓 등
	기타염건어개류		◆ 180-185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염건어개류 ○ 소금에 절인어개류: 간갈치, 간대구, 간꽂치, 간조기, 간갈치 등 ○ 말린어개류: 대구포(가공안한것), 마른새우, 건해삼, 건해파리 등
	어개가공품	ND	◆ 염건어개류 이외의 가공한 어개류 ¶ 통조림 등 가공품과 즉석에서 찌개를 할 수 있도록 채소, 양념 등이 함께 포장한 것도 포함
	어묵		◆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등의 조미료를 넣고 반죽하여 찌거나 튀겨 응고시킨 식품 ○ 어묵 ○ 어묵제품: 꼬치어묵, 어묵바, 핫스틱(상표), 핫참바(상표) 등 ○ 어묵가공품: 어육소세지 등
	맛살		◆ 명태 등의 생선살에 계향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식품 ○ 게맛살, 새우맛살 등
	어포		◆ 생선을 얇게 저며서 양념을 하여 말린 포 ※ 공업적 가공없이 단순히 말린 것 ⇒ 염건어개류 염건어개류를 공업적 더욱 가공한 것 ⇒ 어포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200-240	어개류통조림		○ 어포:대구포,복어포,오징어포,쥐치포,노가리 등 ◆ 각종 어개류를 가공해서 통조림에 보관한 식품
	기타어개가공품		○ 참치통조림:김치참치(상표),짜장참치(상표),카레참치(상표) ○ 기타어류통조림:꽂이통조림,고등어통조림,정어리통조림 등 ○ 기타어개류통조림:골뱅이통조림 등 ◆ 190-19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어개가공품
	채소해조류	ND	○ 조린어개류:멸치조림,건어포조림 등 ○ 담근어개류:게장 등 ○ 튀긴어개류:멸치튀김 등 ○ 볶은어개류:볶음멸치 등 ○ 훈연한어개류:훈제연어 등 ○ 가루화한어개류:멸치가루,새우가루 등 × 냉동새우튀김,냉동해물탕⇒기타식품(379) ◆ 과실을 제외한 식물성 식품 및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가공한 것
	채소	ND	◆ 과실채소를 제외한 밭에 가꾸어 먹는 것 ㉠ 간 것,냉동한 것,물에 담근 것,단순히 쓴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데친 것도 포함 × 채소 말린것(산나물 제외)⇒기타채소가공품(239)
200	배추		○ 배추,얼갈이배추,고냉지배추 등 × 양배추⇒양배추(217)
	무		◆ ㉠ 열무도 포함 ○ 무,열무 등 × 무청⇒기타채소(229)
200	파		○ 대파,쪽파 등
	시금치		◆ ㉠ 삶은 것 또는 데친 것도 포함 ○ 시금치

부 호	항 목 명	내 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상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상추도 포함 ○ 상추 ○ 양상추
	콩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을 발아시킨 것 ○ 콩나물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자 × 녹말가루⇒기타채소가공품(239)
	오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이, 늙은오이 등
	당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당무라고도 함 ○ 당근
	풋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풋고추) × 양념용고추(실고추, 고추가루)⇒고추(290)
	양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호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박, 늙은호박 등
	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 ○ 방울토마토
	고구마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도라지		○ 고구마 × 찢고구마⇒기타채소가공품(239)
	가지		○ 도라지
	양배추		○ 가지
			◆ ¶ 보라색양배추도 포함
	미나리		○ 양배추 × 배추⇒배추(200)
	버섯		○ 미나리
	깻잎		○ 버섯:송이버섯,느타리버섯,표고버섯 등 × 영지버섯가공식품⇒건강보조식품(374)
	부추		○ 깻잎
	기타채소		○ 부추
			◆ 200-22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채소
			○ 기타채소:피망,우엉,연근,쑥갓,아욱,토란,죽순,신선초 등
			○ 봄나물류:달래,냉이,쑥,고사리 등
			○ 재배나물:고사리,숙주나물,취나물 등
			○ 야생채취나물:더덕,비름나물,두릅나물,돌나물 등
			○ 채소부속물:고구마순,고추잎,마늘종,호박잎,솔잎,무청 등
			× 인삼잔뿌리⇒인삼(660)
232	채소가공품	ND	◆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가공한 것 ¶ 절인것,말린것,익힌것,가루화한것 등도 포함 ¶ 통조림,병조림,팩,항아리에 넣은것 등도 포함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240	두부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을 물에 담갔다가 갈아 그 액을 가열하여 비지를 짜내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식품 ○ 두부:순두부,연두부,마파두부 등 ○ 비지 × 유부⇒기타채소가공품(239)
	김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추,오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추,파,마늘,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려 담근 식품 ¶ 약간의 기타채소가 포함된 것도 포함 ○ 배추김치,깻잎김치,깍두기,동치미,오이소백이 등
	기타채소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23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채소가공품 ○ 단무지:무를 소금과 누룩에 달콤하게 절인 일본식 무짬지 ○ 장아찌:무,오이,마늘 및 깻잎 등을 썰어 말려서 간장에 절이고 양념을 하여 묵혀 두고 먹는 식품 ○ 채소통조림:깻잎통조림,마늘통조림 등 ○ 채소가루류:녹말가루,도토리가루 등 ○ 익힌채소류:군고구마,익힌감자 등 ○ 말린채소류:무우말랭이,시래기,호박씨 등 ○ 야채샐러드:채소를 골고루 섞어 마요네즈나 드레싱으로 간을 맞추어 먹는 음식 ○ 피클:채소나 과일에 각종 향신료를 첨가하여 만든 서양식 소금(초) 절인 장아찌 ○ 유부:두부튀긴것과 두부에 채소를 넣어 기름에 튀긴것 ○ 기타채소가공품 × 녹즙⇒음료류(350)
	해조및해조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또는 하천 식물 및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인 가공을 한 것 ¶ 생것,말린것,가루화한것 등도 포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김 조사 ○ 김:구운김,가루김 등 ○ 양념구이김:맛김,돌김 등
	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역:물미역,마른미역,염장미역 등 × 즉석미역국⇒기타식품(379)
	기타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0-24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해조류 ○ 다시마,우뭇가사리,청각,툇,파래,한천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해조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조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 튀각, 우묵, 기타해조가공품 등
250-271	과실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열매(과일) 및 풀의 열매(과실채소) 중 단맛이 나는 것과 그것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250	과실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열매(과일) 및 풀의 열매(과실채소) 중 단맛이 나는 것 ¶ 포장한 것, 냉동한 것도 포함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후지(부사), 홍옥, 아오리, 홍월 등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신고배 등
	복숭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숭아: 황도, 백도, 천도 등 × 복숭아통조림 ⇒ 과실통조림(270)
	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 거봉(상표), 캠벨, 씨없는포도, 청포도 등 × 건포도 ⇒ 기타과실가공품(279)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 익힌밤(군밤) ⇒ 기타과실가공품(279)
	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 단감, 연시, 홍시 등 × 꽃감 ⇒ 기타과실가공품(279)
	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귤(온주밀감) ○ 금감(깡깡) × 오렌지(광귤), 레몬, 그레이프프루트(자몽) ⇒ 오렌지(263) × 시트론, 당귤, 유자, 탕자 ⇒ 기타과실(269)
	참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외, 멜론 등

부 호	항 목 명	내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수박 딸기 바나나 오렌지 기타과실		○ 수박,복수박 등 ○ 딸기 ○ 산딸기 ○ 바나나 ◆ 감귤류중 오렌지(광귤), 레몬,그레이프프루트(자몽)를 조사 ○ 오렌지(광귤) ○ 레몬 ○ 그레이프프루트(자몽) × 궤(온주밀감),금감(깡깡)⇒궤(256) × 시트론,당귤,유자,탱자⇒기타과실(269) ◆ 250-26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과실류 ○ 인과류(仁果類):꽃턱이 과육(비과 등) ○ 준인과류(準仁果類):씨방이 과육(시트론,당귤,유자,탱자 등) ○ 핵과류(核果類):중과피가 과육(매실,살구,자두,앵두,대추 등) ○ 견과류(堅果類):떡잎이 과육(호두,잣,아몬드 등) ○ 장과류(漿果類):즙이 많은 과일(키위,다래,파인애플 등) ○ 기타과실류:모과,무화과,머루,아보카도 등
271	과실가공품 잼 기타과실가공품	ND	◆ 과실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 건조 및 설탕 등으로 조리한 것 ¶ 통조림,병조림도 포함 × 과즙음료⇒과채음료(354) ◆ 과일에 다량의 설탕을 넣고 조려서 만드는 저장식품. ○ 과일잼:사과잼,포도잼,딸기잼 등 × 곡물잼(땅콩잼)⇒기타곡물가공품(129) ◆ 27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과실가공품 ¶ 과자 및 음료로 한 것은 제외 ○ 과실통조림:넥타 등 ○ 말린과실:건대추,건바나나,건포도,꽃감 등 ○ 씨뺀고말린과실:꽃감,건포도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280-290	유지및조미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운과실:군밤 등 ○ 기타과실가공품 ◆ 유지 및 조미료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통조림, 병조림, 팩, 튜브에 넣은 것도 포함 ㄴ 식탁용도 포함 ※ 유지:식물 또는 동물에서 채취한 식용기름 조미료:음식조리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미를 목적으로 한 것
280	유지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 또는 동물에서 채취한 식용기름
	참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깨를 압착하여 얻는 기름
	식용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기름 × 들기름⇒들기름(282) ◆ 콩기름,옥수수기름,옥배유 등의 식용유제품을 조사 ※ 식용유란 음식을 만드는 식용의 기름을 총칭하나 여기서는 식용유제품에 대표적인 콩기름,옥수수기름,옥배유 등만을 조사 ○ 식용유:콩기름,옥수수기름,옥배유 등
	들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깨를 압착하여 얻는 기름
	기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기름 × 참기름⇒참기름(280) ◆ 280-28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유지
290	조미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가린:식물성 유지에 발효유·색소·향료 등을 넣어서 버터와 비슷한 맛을 낸 식품 천연 버터의 대용품으로 만든 지방성 식품 ○ 기타유지:고추기름,미강유,올리브유,채종유,야자유 등 × 버터⇒버터(152) ◆ 음식조리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미를 목적으로 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단순가공한 것도 포함 ㄴ 식탁용도 포함
	고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말린 것,자른 것,가루화한 것도 포함 ○ 양념고추,고춧가루,마른고추,실고추 등 × 고추(꽃고추)⇒꽃고추(210) × 고추잎⇒기타채소(229)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것, 말린 것, 껍질을 벗긴 것, 가루화한 것도 포함
	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 간마늘, 마늘가루 등 × 마늘종 ⇒ 기타채소(229) ◆ 말린 것, 껍질을 벗긴 것, 가루화한 것도 포함 ○ 생강 ○ 생강가루
	카레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레가루만 조사 ○ 카레가루 × 3분카레 ⇒ 기타식품(379)
	설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백당, 각설탕, 얼음설탕, 흑설탕 등
	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 맛소금 통합 ○ 천일염, 재제염, 죽염, 암염 등 ○ 맛소금 × 깨소금 ⇒ 깨(303)
	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깨, 들깨 등을 조사 ○ 참깨 ○ 들깨 ○ 소량의 소금을 넣은 것(깨소금)
	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르지 않은 간장, 진간장, 된장에서 흐른 액체, 생선회용 간장 등을 조사 ○ 조선간장(진간장), 양조간장, 생선회용간장 등
	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된장: 간장을 담가서 장물을 떠낸 건더기 ○ 개량식된장: 메주에 소금을 넣어 만든 된장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고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가지 방법을 절충한 절충식 된장 ○ 봄철에 담그는 담복장·막장, 여름철에 담그는 집장·생황장 ○ 가을철에 담그는 청태장·팔장, 겨울철에 담그는 청국장 ○ 기타된장:쌈장,막장 등 × 짜장(춘장)⇒기타조미료(319) ◆ 한국의 장류중 하나 ▶ 소량의 식초를 넣은 것(초장)도 포함
	혼합조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장 ○ 초장 ◆ 각종 조미료를 혼합하여 분말,과립 또는 고형상으로 건조 가공한 것 ○ 혼합조미료:다시다(상표),맛나(상표) 등 ○ 화학조미료:미원(상표) 등
	식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맛을 가지는 조미료 ○ 식초(과실의 신맛을 이용한 것):감식초,사과식초 등 ○ 식초(아세트산에는 발효시켜 양조한 것):양조식초 등
	토마토케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토를 갈아서 거른 후 설탕·소금·식초·향신료를 넣어 조린 소스 ○ 토마토케첩
	마요네즈및드레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시 식품의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마요네즈:정제된 식물성 기름,달걀 노른자 및 식초 등의 재료로 만든 셀러드용 드레싱소스 드레싱:샐러드,냉요리,전채(前菜) 등에 사용되는 소스 ○ 마요네즈 ○ 드레싱:유화형드레싱,분리액상드레싱,샐러드드레싱,프렌치드레싱 등
	기타조미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31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 액체조미료:미림(상표),다담(상표),불고기양념장(상표),국시장국(상표) 등 ○ 분말조미료(원칙적으로 밥에 뿌려 먹기 위해 조제된 것):뿌비또(상표),쇠고기볶음밥메이트(상표) 등 ○ 기타장류:춘장(짜장) 등 ○ 감미료:사카린,시럽,물엿(엿기름),그린스위트(상표),화인스위트(상표)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320	<p>빵및과자류</p> <p>기타빵류</p> <p>한식과자</p> <p>과자류</p>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류: 햄버거소스, 스테이크소스, 피자소스, 하이라이스소스, 칠리소스 등 ○ 향신료: 후추, 계피, 겨자, 와사비(고추냉이) 등 ○ 종합조미료세트 ○ 기타조미료: 식용색소,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조미용 술 등 × 새우가루, 멸치가루 ⇒ 기타어개가공품(199) × 채소가루 ⇒ 기타채소가공품(239) ◆ 식사이외의 간식으로 먹는 기호품 × 식사대용의 식빵 및 스낵빵 ⇒ 스낵빵(111) ◆ 빵중 기본적인 원재료(곡분, 호모, 식염, 설탕, 기름)이외의 재료를 넣어 처음부터 한가지 모양으로 만든 빵 ¶ 케이크 및 기성빵(회사빵)제품도 포함 ○ 케이크: 밀가루(또는 녹말)를 스펀지 상태로 구워 버터(또는 마가린·식물성 유지), 우유, 생크림 등의 재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구운 것 ¶ 잘라 파는 것도 포함 ○ 빵제품: 슈크림빵, 소보레빵, 버터빵, 크림빵, 카스텔라 등 ○ 제과점빵 ○ 유사빵: 전빵, 호빵, 도너츠 등 ○ 기타빵: 봉어빵, 호떡, 호도과자 등 × 햄버거용빵, 핫도그용빵, 식사대용의 식빵 및 스낵빵 ⇒ 스낵빵 × 빵과자(초코파이) ⇒ 과자류(328) ◆ 한국의 전통 과자, 양과(洋菓)와 구별 ○ 강정(薑餅)류: 강정, 산자 등 ○ 유밀과(油蜜果)류: 유밀과, 약과, 만두과, 타래과, 박계(朴桂), 매자과 등 ○ 숙실과(熟實果)류: 밤초·대추초·울란(栗卵)·조란(棗卵) 등 ○ 다식(茶食)류: 밤가루, 송화가루, 콩가루 등을 꿀에 반죽하여 무늬가 새겨진 다식판에 박아 만든 과자 ○ 정과(正果): 각종 과일이나 새양·연근·당근·인삼 등을 꿀이나 설탕에 쟁이거나 조려서 만든 한국 고유의 과자 ○ 옛: 곡식에 옛기름을 섞어 당화시켜 졸인 식품 × 양갱 ⇒ 기타과자(339) ◆ 비스킷, 스낵과자 등을 조사 ¶ 비스킷, 스낵과자에 초콜릿이 결합된 초코빵(초코파이)과 초코스틱(빼빼로) 등 초콜릿가공품도 포함 ○ 비스킷: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지방·우유·버터·달걀·당분·향료 등을 섞어서 반죽하여 여러 모양의 틀에 구워낸 마른과자 ⇒ 비스킷에 크림, 잼 등을 사이에 넣은 것(샌드)과 소프트비스킷(웨하스)도 포함 ⇒ 쿠키, 크래커, 샌드, 웨하스, 파이 등을 조사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초콜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래커: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비스킷같이 얇고 딱딱하게 구운 과자 ○ 샌드: 비스킷에 크림, 잼 등을 사이에 넣은 것 ○ 웨하스: 부드러운 원료(밀가루·콘스타치·우유·달걀노른자 등)를 잘 혼합해서 유동성의 묽은 반죽을 만들어 오븐에 구운 비스킷 ○ 파이: 누네띠네(상표), 후렌치파이(상표) 등 ○ 스낵과자: 맛동산(상표), 새우깡(상표) 등 ○ 칩과자: 프링클스(상표), 포테이토칩(상표) 등 ○ 빵과자: 초코파이(상표), 카스타드(상표), 몽쉘통통(상표), 오뜨(상표) 등 ○ 불과자: 오징어땅콩(상표), 홈런볼(상표) 등 ○ 스틱과자: 뽕뽕(상표) 등 ○ 쌀과자: 쌀로별(상표), 쌀로풍(상표) 등 ○ 팝콘 ○ 땅콩과자: 머거본땅콩(상표), 커피나(상표) 등 ○ 기타과자: 고래밥(상표) 등 × 시리얼(스타베리, 코코볼, 초코칩스) ⇒ 시리얼식품(127) × 강냉이 ⇒ 기타곡물가공품(129) × 아이스크림과자(싸만코(상표)) ⇒ 아이스크림(334) ◆ 카카오나무에서 얻은 코코아원료에 밀크, 버터, 설탕, 향료 등을 첨가하여 굳힌 과자 ○ 초콜릿: 가나초콜릿(상표) 등 ○ 초코스낵: 자유시간(상표), 핫브레이크(상표) 등 ○ 초코볼: 티피(상표), 새알(상표) 등 ○ 기타초콜릿: 키네스(상표) 등 × 비스킷, 스낵과자에 초콜릿이 결합된 초코빵(초코파이)과 초코 스틱(뽕뽕) 등 ⇒ 과자류(328)
	사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멜, 드롭스, 젤리 및 땅콩 등을 당류로 쓴 것, 설탕을 주체로 하는 과자의 총칭 캔디(candy)라고도 함 ¶ 소프트캔디, 목캔디도 포함 ○ 드롭스: 알사탕(상표), 스카치(상표), 추파츨스(상표) 등 ○ 카라멜류: 밀크카라멜(상표) 등 ○ 과즙구미류: 마이구미(상표) 등 ○ 츄잉캔디류: 비틀즈(상표) 등 ○ 목캔디류: 허브큐(상표) 등 × 솜사탕, 젤리, 양갱 ⇒ 기타과자(339)
	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미와 씹는 기분을 즐기는 껌 ○ 껌 ○ 풍선껌 × 츄잉캔디 ⇒ 캔디(333)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상	항 목 분 류 사 례 명
	아이스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또는 유지방, 무지유고형분(無脂乳固形分)에 설탕·달걀·안정제(젤라틴 등)·향료·색소 등을 넣고 휘저어서 얼린 빙과 ○ 아이스바: 누가바(상표), 메로나(상표) 등 ○ 아이스콘: 브라보콘(상표), 월드콘(상표) 등 ○ 쎄슬바: 쭈쭈바(상표), 더위사냥(상표) 등 ○ 패밀리아이스크림: 투게더(상표), 베스키라빈스31(상표), 삼색델리(상표) 등 ○ 아이스컵: 고드름(상표), 와(상표), 찰떡아이스(상표) 등 ○ 소프트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과자: 봉어사만코(상표) 등 ○ 기타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익, 샤베트류 등
	기타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0-33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과자 ○ 종합과자세트: 종합선물세트(상표) 등 ○ 생과자류 ○ 젤리류: 젤리파티(상표), 젤리뽕(상표) 등 ○ 양갱류: 영양갱(상표) 등 ○ 과자재료: 아이스크림재료 등 ○ 기타과자: 솜사탕, 건빵 등
340-362	차음료및주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의약품 이외의 마시는 것으로 알콜성분 1%미만인 식품 ¶ 재료가 되는 차의 잎, 과립, 분말 등의 재료도 포함 ¶ 자동판매기, 역내, 구내판매도 포함 ¶ 통조림(캔)으로 된 커피 및 차 음료도 포함
340	차및음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와 음료를 조사 ¶ 기타 재료를 소량을 넣은 것도 포함
	커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콩을 주원료로 한 것 및 마실 것 ¶ 알맹이, 과립, 분말, 고체, 액체(음료)인 것도 포함 ¶ 설탕 및 커피크림을 넣은 것도 포함 ¶ 자판기커피도 포함 ¶ 통조림(캔)으로 된 커피음료도 포함 ○ 커피원두 ○ 커피(모카커피, 카페오레, 카푸치노 등) ○ 커피믹스 ○ 커피음료(자판기커피, 차내 등) ○ 캔커피: 통조림(캔)으로 된 커피음료, 맥스웰(상표) 등 × 커피우유 ⇒ 우유(150) × 코코아 ⇒ 기타차(349) × 다방커피 ⇒ 기타외식(399)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기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0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알,과립,분말,고체,액체 등 형태 구분없음 ¶ 통조림(캔)으로 된 차음료도 포함 ○ 보리차:보리차용 보리(티백도 포함) ○ 엽차:녹차(불발효차),홍차(발효차),우롱차(반발효차,오롱차의 중국 발음) 등 ○ 재료차:옥수수차,유자차,계피차,망콩차,울무차,등글레차,들깨차,매실차 등 ○ 전통차:인삼차,생강차,쌍화차,취차 등 ○ 기타차:코코아 등 × 차음료(매실캔)⇒음료류(350) × 수정과⇒기타음료(359) × 배달차⇒기타외식(399)
	음료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차,두유,생수를 제외한 음료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음료,과실채소이외의 재료의 것,분말주스 등도 포함 ¶ 통조림,병조림,팩도 포함 ※ 탄산음료:탄산가스를 넣은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즙음료:과일 또는 채소의 액즙을 10%이상 함유한 것으로 탄산가스 및 유산균을 포함하지 않은 것 ○ 착향탄산음료:콜라(상표),사이다(상표),환타(상표) 등 ○ 우유탄산음료:밀키스(상표) 등 ○ 보리탄산음료:보리텐(상표) 등 ○ 식이탄산음료:꾸러기철력(상표) 등 ○ 이온탄산음료 ○ 탄산수 ○ 기타탄산음료:탄산과즙음료 ○ 과일주스:오렌지주스,사과주스,포도주스 등 ○ 채소주스:녹즙 등 ○ 과채주스:과일과 채소의 혼합 재료 주스 ○ 과즙음료:봉봉(상표),사각사각(상표) 등 ○ 채소음료:당근농장(상표),토마토농장(상표) 등 ○ 과채음료:과일과 채소의 혼합 재료 음료 ○ 미과즙음료:(니어워터(상표) 등 ○ 이온음료:포카리스웨트(상표) 등 ○ 식이음료:미에로화이바(상표) 등 ○ 쌀음료:아침햇살(상표) 등 ○ 전통음료:식혜,수정과 등 ○ 드링크음료:영비천(상표) 등 ○ 셰이크류:밀크셰이크 등 ○ 기타음료:분말주스 등 × 음료에 유산균이 포함된 것⇒요구르트(154) × 약제품이 포함되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용품(박카스 등) ⇒양약(663)
	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대두)을 갈아서 만든 콜로이드(밀크) 상태의 음료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361	생수 주류 탁주 소주 맥주 기타주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बे지밀(상표),삼육두유(상표) 등 ◆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샘물 ○ 먹는샘물 ◆ 알코올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음료 ¶ 통조림,병조림,팩도 포함 × 조미용 술⇒기타조미료(319) × 술집에서 마신 술⇒음주대(396) ◆ 찹쌀,맷쌀,보리,밀가루 등을 찌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술 막걸리라고도 함 ○ 탁주(막걸리) ○ 동동주 ◆ 주정을 희석하고 조미료를 첨가한 한국식 증류주 ○ 소주:참이슬(상표),산(상표) 등 × 민속소주(안동소주)⇒기타주류(369) ◆ 맥아,호프,물을 주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술 ○ 맥주 ○ 생맥주 ○ 기타맥주:흑맥주 등 ◆ 361-36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주류 ○ 청주(정종):쌀·누룩·물을 원료로 하여 빻아서 걸러낸 맑은 술(청하(상표) 등) ○ 위스키: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양조주를 증류하여 숙성시킨 술 ○ 포도주 : 포도를 천연 발효시켜 숙성 여과한 술(와인,샴페인 등) ○ 브랜디(BRANDY) : 와인,사이다를 증류하여 숙성시킨술(꼬냑 등) ○ 보드카(VODKA) : 옥수수,감자등의 전분질을 발효,증류하여 만든것을 활성탄으로 여과한 술 ○ 럼(RUM) : 사탕수수의 당밀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 ○ 진(GIN) : 주정에 주니퍼 베리,계피 등의 향료식물을 침출시켜 ○ 칵테일(COCKTAIL) : 양조주나 증류주에 다양한 음료나 과일을 섞은 술 ○ 중국주(고량주 등)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370-380	기타식료품	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주(안동소주, 동동주, 문배주, 경주법주, 복분자술, 토속약주 등) ○ 기타주류:백세주,인삼주,뱀술,취술 등 ◆ 100-369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식품 및 기타식품서비스 및 식품관련서비스
370	기타식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식품 ¶ 다양한 원료가 혼합되어 항목분류가 곤란한 제품
	이유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즉석식품으로 곡분,야채,육류 및 과일을 분말화하고 이에 비타민,무기물 등을 혼합한 것 ○ 이유식:거버(상표) 등
	스프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거운 물만 넣으면 스프(soup)가 만들어지도록 재료를 배합하여 분말화한 것 ¶ 과일,고형인 것도 포함 ¶ 죽제품도 포함 ○ 쇠고기스프(분말),양송이스프(분말),야채스프(분말) 등 ○ 쇠고기죽(분말),양송이죽(분말),야채죽(분말) 등 × 레토르트식품⇒기타식품(379)
	커피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분말화한 것 ○ 커피크림:프리마(상표) 등
	별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꿀(자연꿀):별꿀,로얄제리 등 ○ 당밀(인공꿀):인공꿀 등
	건강보조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성분의 보급 등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보조식품 ¶ 정제,캡슐,과립상태,분말상태,입자상태,액(액기스)상태 등 구분없음 ○ 뱀장어유가공식품:뱀장어에서 채취한 기름을 분리,정제한 것 ○ 로얄제리가공식품: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수집하여 가공한 것 ○ 화분가공식품:꽃가루에서 유효성분을 추출,정제한 것 ○ 스쿠알렌식품:상어간에서 추출한 스쿠알렌 함유기름을 분리,정제한 것 ○ 효모식품:식품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킨 것 ○ 유산균함유식품:유산구균,비피더스균 등의 식용가능 생균을 배양한 것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상	항 목 분 류 서 례 명
	김밥및도시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류식품:클로렐라,스피루리나 등의 조류를 인위적으로 배양하여 가공한 것 ○ 배아가공식품:곡류의 배아에서 채취한 기름을 식용가능하도록 정제한 것 ○ 버섯(영지,운지)가공식품:영지,운지 자실체의 건조물을 분말화한 것 ○ 알로에식품:식용알로에품종(베라)의 잎을 식용가능하도록 가공한 것 ○ 자라가공식품:양식한 자라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 ○ 키토산가공식품:갑각류(게,새우)의 껍질에서 얻어지는 키토산을 효소처리한 것 ○ 기타건강식품:건강원에서 조리한 식품 개소주,흑염소,붕어즙 등 ◆ 공업적 가공이외의 일반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조리한 김밥 및 도시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이외의 장소(편의점 등)의 것:음식점에서 먹으면 식사대(390)로 분류 ¶ 냉동품은 제외 ○ 김밥,주먹밥 등 ○ 도시락 ○ 기타조리된밥:초밥,산채밥 등 × 밥만 있는 것⇒즉석밥(126) × 김밥재료세트⇒반찬재료세트(377)
	조미반찬및재료 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미반찬 및 반찬재료세트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점판매,집배달 구분없음 ○ 조미반찬:콩자반(반찬),멸치조림(반찬),잡채(반찬) 등 ○ 조미밥재료세트:김밥재료세트,복음밥재료세트 등 ○ 반찬재료세트:해물탕재료세트,부대찌개재료세트 등 × 김치류⇒김치류(234) × 김밥⇒김밥도시락(375)
	기타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0-37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식품 ※ 레토르트식품:물 등 내용물을 추가하지 않고 데워 먹을 수 있는 것(3분카레 등) 냉동식품:조리된 식품을 냉동하여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식품(냉동피자 등) 동결건조식품:냉동된 식품을 진공, 건조상태로 보존한 것(즉석미역국 등) ○ 인스턴트카레:3분카레(상표),3분짜장(상표),3분하이라이스(상표) 등 ○ 미트소스류:3분미트볼(상표),하이라이스(상표),쇠고기덮밥(상표) 등 ○ 즉석탕류:즉석죽(포장),즉석삼계탕(포장),즉석곰탕(포장) 등 ○ 즉석스테인크류:햄백스테인크,그라땅,즉석완탕,탕수완자 등 ○ 만두류:냉동만두,냉동만두피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380	식료품관련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자류:냉동피자 등 ○ 까스류:냉동돈까스 등 ○ 후라이류:냉동새우튀김(상표) 등 ○ 완자류:동그랑땡,냉동미트볼(상표),떡갈비(상표) 등 ○ 패티류:햄버거패티 등 ○ 즉석복어국,즉석해장국,옛날사골곰탕,사골우거지국 등 ○ 기타식품:술안주세트,튀김류,팔빙수 × 카레가루⇒카레(294) × 스프가루⇒스프가루(371) × 배달음식⇒식사대(390) ◆ 식료품관련서비스 ◆ 식료품가공비 ○ 출장요리 ○ 식료품 가공비:고추가루빵은 샐,기름잔 샐,떡방아 샐 등
390-396	외식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대(단체급식도 포함),음주대,기타음식 등을 조사
390	식사대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대(단체급식도 포함)를 조사 ◆ 식사에 지불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음식도 포함 ¶ 음식점에서 가지고 나와서(Take Out) 먹은 것도 포함 ¶ 한식,양식,분식,뷔페 등의 식사형태 구분없음 ¶ 식사대에 포함된 음주대도 함께 조사 ※ 뷔페:여러 그릇에 음식을 담고 접시와 포크를 따로 놓아 먹을 사람이 마음대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사 ○ 배달음식:치킨배달,피자배달,짜장면배달,탕수육배달 등 ○ 한식:한정식,불고기,백반,비빔밥,냉면,곰탕,설렁탕,보신탕 등 ○ 중식:짜장면,짬뽕,우동,탕수육,팔보채 등 ○ 양식:경양식,스테이크 등 ○ 일식:Hits집 등 ○ 뷔페:각종 뷔페 ○ 분식점(스낵코너) 및 편의점에서의 식사 ○ 길거리(포장마차 등)에서 사먹은 음식 ○ 기타식사:출장뷔페(재료포함),디너쇼,야외도시락 × 출장요리(재료없는 서비스)⇒식료품가공비(380) × 단체급식⇒단체급식(395) ◆ 학교,사업장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권도 포함 ○ 학교단체급식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396	음주대	S	○ 사업장단체급식 ○ 단체급식식권대 ※ 요정,바(Bar),나이트클럽,비어홀,디스코클럽,카바레,극장식주점,대포집,간이주점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과 이에 따른 요리를 제공하는 업체 및 무도유흥장에 지불한 비용
390	기타외식	S	○ 음주대 ※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생과자,떡 및 커피,차,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제과점,다방 등에서 즉석식사에 대한 지출 ○ 다방커피 ○ 일일찾집티켓
2) 주 거			
400-429	주거	ND,S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주택에 관계된 재화 및 그에 동반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사업경비가 있는 임차주택에 관계된 지출은 제외 × 주택 또는 토지의 구입,신축,증개축⇒부동산구입(925) × 주택관련대출상환⇒주택부금상환(930)
400-400	월세	S	
400		S	◆ 주택 또는 주거용 토지의 임차료 ¶ 민영주택,공영주택,사택 구분없음 ○ 월세 ○ 보증부월세중 월세 ○ 사글세 ○ 토지임차료(주거용) × 임차사례금(중개수수료)⇒기타주거서비스(429) × 주택구입⇒부동산구입(925) × 임대보증금(계약금,권리금,임차료인상금)⇒기타자산증가
405-409	주택설비수선재료	ND	◆ 주택용 설비용품 및 수선재료 ※ 설비용품:내구재적 성격을 가진 주택재료 수선재료:준내구재(소모품 포함)적 성격을 가진 주택재료 × 설치비 등 서비스와 결합된 것⇒설비수리서비스(410)
405	도배지	ND	◆ 벽면을 보호하고 장식을 위해 바르는 것 ¶ 재질 구분없음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06	바닥재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지 ○ 벽지, 띠벽지 × 문에 바르는 창호지(문풍지) ⇒ 기타수선재료(408) ◆ 주택의 바닥에 까는 것
408	기타수선재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판 ○ 원목마루 ○ 기타바닥재: 타일, 조립마루재 등 × 바닥에 접촉되지 않은 것(카펫, 양탄자, 돛자리) ⇒ 깔개(544) ◆ 405-40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수선재료
409	설비용품및기구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 목재, 대나무, 베니아판 등 ○ 유리 ○ 시멘트: 시멘트, 벽돌, 모래, 자갈 등 ○ 페인트: 페인트, 니스, 락카, 붓(페인트용) 등 ○ 기타수선재료: 창호지, 못, 방수제, 사포, 양면테이프(주택용), 철사, 잔디 등
415-429	설비수리및주거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재적 성격을 가진 주택재료 ¶ 설치비 등 서비스와 결합된 것은 설비수리서비스로 조사 ¶ 부품도 포함 ※ 이사시 옮겨가지 않는(주택과 분리안됨) 가사용품및가구집기는 주거비(예: 불박이장)로 분류하고, 이사시 옮겨가는 것은 가구집기가사용품으로 분류(예: 이불장) ○ 장롱: 불박이장 등 ○ 전기용품: 계량기(전기, 가스), 전등(불박이), 전기차단기 등 ○ 가스용품: 가스밸브, 가스배출기, 도시가스호스, 계량기(전기, 가스), 환풍기 등 ○ 창문용품: 창문, 창문틀, 알미늄샷시, 방충망, 방법창 등 ○ 욕실용품: 변기, 세면기, 초인종, 욕조, 수도꼭지, 비데(온수세정변기), 순간온수기 등 ○ 부엌용품: 싱크대, 빨래건조대(불박이) 등 ○ 정원용품: 정원석, 가로등, 조립식창고 등 ○ 열쇠등: 보조키, 열쇠, 인터폰 등 × 설치비 등 서비스와 결합된 것 ⇒ 설비수리서비스(415) × 빨래건조대(이동용), 수도절수기 ⇒ 기타가사잡화(525) ◆ 주택, 정원, 담장 등의 주택에 관련된 신규설비 비용 및 보일러 수리 등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보수, 수리비) 또는 유지에 드는 비용 ¶ 내구년수 연장을 위한 지붕보수 및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철거비 등도 포함 × 거주면적을 증가(배란다공사)시키는데 드는 비용 ⇒ 부동산구입(925)

부 호	항 목 명	내 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415	설비수리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정원,담장 등의 주택에 관련된 신규설비 공사비 및 보일러수리 등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보수,수리비)에 드는 비용 ¶ 공사계약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화도 포함하여 조사 ○ 공사비:가스,전기,방수 등 ○ 노임:도배공,목수,미장이 등 ○ 설치비:도시가스,보조기설치,보일러설치,에어컨설치 등 ○ 수리비:주택,보일러,싱크대 등 ○ 공사인부식대 등 관련비용 × 아파트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비(420)
420	공동주택관리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 공동주택관리비:아파트관리비,정원관리비 등 ○ 공동부담금:경비원산재보험료,승강기유지비 등 ○ 아파트수선충당금: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화재보험료⇒화재보험료(421)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상하수도료⇒상하수도(430)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전기료⇒전기료(436)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난방비⇒공동주택난방비(450)
421	화재보험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충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화재보험료는 포함 ○ 주택(공동주택)화재보험료
429	기타주거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5-42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주거서비스 ○ 주택거래수수료:부동산구입·전세·월세 중개인수수료 등 ○ 방범비:세콤(상표) 등 ○ 기타주거:해충퇴치(CESCO)비용,아파트소독비,가스누출점검비 등
3) 광열수도			
430-450	광열수도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냉난방 및 취사 등 가사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지출
430-430	상하수도료	ND	
430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하수도요금은 분리 ※ 상수도:수도법에 있는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의 구입 금액 하수도:쓰고 버린 물을 배출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 상수도:상수도요금,공동수도료,급탕비 등 ○ 하수도:하수도요금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36-436	전기료	ND	
436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에 있는 일반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구입금액 ○ 전기료, 공동전기료, 심야전기료 등
440-449	연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료이외의 광열비 ※ 광열비:조명,냉난방 및 취사 등 가사에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출 × 공동주택의 광열비⇒공동주택난방비(450) × 버너용알콜,고체알콜연료⇒기타취미오락용품(769) × 차량용연료⇒연료비(차량용)(814)
440	연탄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탄연료 ○ 연탄
441	등유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열수도용 등유 구입금액 ○ 등유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등유⇒공동주택난방비(450)
442	경유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열수도용 경유 구입금액 ○ 경유 ×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경유⇒공동주택난방비(450)
443	도시가스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사업법에 있는 일반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 구입금액 ○ 도시가스(LNG) × 도시가스설치비⇒설비수리서비스(415)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공동주택난방비(450)
444	L P G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가스통에 들어있는 가스의 구입금액 ○ LPG(취사및냉난방용), 부탄가스 등 × 가스용기⇒가스레인지(484)
449	기타연료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0-44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광열비 ○ 석탄:석탄,조개탄 등 ○ 나무:목탄,장작 등
450-450	공동주택난방비	ND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50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중 전기료 이외의 광열비 ¶ 공동주택관리비중 공동주택난방비를 분리할 것 ¶ 연료 구분없음 ¶ 취사에 사용하는 연료도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취사연료비 ○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냉난방연료비
4) 가구집기가사용품			
460-579	가구집기가사용품	D,SD,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및 가사(취사,냉·난방,세탁,청소,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그와 동반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 이사시 옮겨가지 않는(주택과 분리안됨) 가구집기가사용품은 주거비(예:블박이장)로 분류하고, 이사시 옮겨가는 것은 가구집기가사용품으로 분류(예:이불장)
460-479	일반가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불,의류,식기,책 등의 수납용 가구 및 음식조리대,식탁 등의 부역용 가구 ¶ 단품 또는 부분품도 포함
460	장롱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이불 및 의류의 수납에 사용되며,서랍이나 선반을 갖추고 있는 것 ¶ 조립식 장롱도 포함 ○ 이불장,옷장,서랍장 등 × 블박이장⇒설비용품및기구(409) × 장식장⇒장식장(462) × 비키니옷장⇒기타일반가구(479)
462	장식장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책,식기,기타잡품 등을 진열하는 장식용선반으로,서랍이나 선반을 갖추고 있는 가구 ※ 식기장:주로 식기,접시,쟁반 등의 진열하는 부역용 선반으로, 서랍이나 선반을 갖추고 있는 가구 ○ 책장:주로 책을 진열하기 위한 장식장 ○ 식기장:식기장식장,찬장,찾잔보드,사이드선반 등 ○ 기타장식장:문갑,캐비닛 등 × 책상위에 놓는 책꽂이⇒책상의자(466) × TV대,오디오장,PC책상=>기타일반가구(479)
463	화장대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울과 거울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서랍을 갖추어서 화장도구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가구 ○ 화장대 × 문갑⇒장식장(462)
464	침대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구 ¶ 유아용도 포함 ○ 침대(싱글,더블,2단침대,유아용) × 매트리스⇒기타침구류(549)
465	소파세트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거실(응접실)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 ¶ 단품 및 부품도 포함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66	책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접세트:소파,응접용탁자 등 ○ 의자(휴식용),안락의자 등 ○ 테이블(휴식용) × 학생용 공부책상 및 의자⇒책상의자(466) × 주방용 테이블 및 의자⇒식탁세트(468) × 식사용 밥상⇒기타일반가구(479) ◆ 주로 공부방(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중 책상 ¶ 단품 및 부품도 포함 ¶ 사무용책상도 포함
467	의자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책상,얕은뱅이책상,접는식책상 등 ○ 책상부품,책꽂이 등 × 소파 등 안락용 테이블 및 의자⇒응접세트(465) × 주방용 테이블 및 의자, 식사용 밥상⇒식탁세트(468) × TV대,오디오장,PC책상=>기타일반가구(479) ◆ 주로 공부방(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 ¶ 단품 및 부품도 포함 ¶ 사무용의자도 포함
468	식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의자,얕은뱅이의자,접는식의자 등 × 소파 등 안락용 테이블 및 의자⇒응접세트(465) × 주방용 테이블 및 의자, 식사용 밥상⇒식탁세트(468) × TV대,오디오장,PC책상=>기타일반가구(479) ◆ 주로 부엌(식당)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 ¶ 단품 및 부품도 포함
470	밥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탁 ○ 식탁의자 × 학생용책상⇒책상(466) × 식사용 밥상⇒기타일반가구(470) ◆ 주로 부엌(식당)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중 밥상 ¶ 단품 및 부품도 포함
479	기타일반가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상 × 학생용책상⇒책상(466) ◆ 460-46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일반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상류:다리 형태에 따라 반,상으로 나누며 음식을 나를때 사용하는 소반도 포함 교자상,자개상,챗상,소반 ○ 기타장:비키니옷장,신발장,쌀통 등 ○ 옷걸이:대형옷걸이,행거 등 ○ 기타일반가구1:TV대,오디오장,PC책상 등 ○ 기타일반가구2:금고,플라스틱정리함 등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480-499	가정용기기	D	○ 앵글(조립식):장식장대용 등 × 종이옷상자⇒기타가사잡화(525) ◆ 가사(취사,냉·난방,세탁,청소,재봉 등)에 필요한 내구재 ¶ 부품도 포함
480	냉장고	D	◆ 식품의 저온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기기 ¶ 냉동고도 포함
481	전기밥솥	D	○ 냉장고,냉동고 등 ○ 냉장고부품:선반,냉매 등 × 김치냉장고⇒김치냉장고(488) ◆ 주로 밥을 짓거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전기기기
482	기타취사용전기 기기	D	○ 전기밥솥,전기보온밥통 등 ○ 보온겸용밥솥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압력솥⇒솥(505) ◆ 481,48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취사용 전기기기
483	전자레인지	D	○ 조리기구:전기쿠커,전기토스터(제빵기),전기후라이팬 등 ○ 믹서기구:믹서,쥬스믹서기,녹즙기 등 ○ 기타기구:음식커트기,전기약탕기,커피포트 등 × 전기밥솥⇒전기밥솥(481) ◆ 마이크로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전기 조리기구
484	가스레인지	D	○ 전자레인지,전자오븐레인지 등 ◆ LNG,LPG 등 취사용 연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가스 조리기구
485	정수기	D	○ 가스레인지 ○ 가스오븐레인지 ○ 가스레인지부품:가스차단기,LPG통,가스관,가스밸브 등 × 가스레인지설치비⇒기타가사서비스(579) ◆ 물을 정수하는 가정용 기기
486	식기건조기	D	○ 정수기(수도꼭지형도 포함) ○ 정수기부품:정수기맥반석,필터(정수기용) 등 ◆ 식기를 세척 또는 건조하는 가정용 기기
487	난로및온풍기	D	○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등 × 식기건조대⇒기타주방용품(519) ◆ 난방 기구 ¶ 연료 구분없음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88	김치냉장고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풍기 ○ 히터(가스, 팬) ○ 난로(석유, 전기) × 냉방 및 난방기능을 모두 가진 것 ⇒ 에어컨(491) ◆ 주로 김치의 저온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냉장고
490	공기정화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냉장고 ○ 김치냉장고부품 ◆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 ○ 공기정화기 ○ 공기청정기
491	에어컨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를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장치 ¶ 냉방 및 난방기능을 모두 가진 것도 포함 ○ 에어컨 ○ 에어컨부품: 에어컨가스 등
492	선풍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등에서 전동기의 축에 장치한 날개를 회전하여 바람을 일으켜 서늘한 느낌을 주는 기계 ○ 선풍기 ○ 얼음냉풍기 ○ 선풍기부품: 선풍기날개 등 × 선풍기보관용보 ⇒ 기타직물제품(559)
493	가습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기구 ○ 가습기
494	세탁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의류 세탁을 하는 장치 ○ 세탁기 ○ 건조기(의류용) ○ 탈수기 ○ 세탁기부품: 호스 등
495	전기청소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압부(低壓部)의 흡수력을 이용하여 먼지 등을 빨아들이게 된 청소 기구 ¶ 충전식도 포함 ○ 전기청소기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496	전기다리미	D	○ 청소기부품:청소기면지통 등 × 자동차용 청소기⇒부품및관련용품구입(813)
499	기타가정용기기	D	○ 전기다리미 ◆ 480-49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기기 ¶ 전기사용유무 구분없음
500-519	식기주방용품	SD	○ 기타난방용기기:전기담요,전기방석,전기장판 등 ○ 재봉기기:재봉틀 등 ○ 전기가정용공구:전기드릴 등 ○ 원예기기:잔디깎기,스프링쿨러 등 ○ 전기살충기기:해충퇴치기,훈증기(모기향) 등 × 해충약,훈증기(모기향)약⇒살충방충제(534) ◆ 취사에 사용되는 주방용 준내구재 ¶ 재질에 상관없음 ¶ 전기제품은 제외 ¶ 소모품은 제외
500	식기류	SD	◆ 주방에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공기,주발,대접,접시 등을 조사 ○ 주발,공기 등 ○ 대접 ○ 접시:납작한 그릇 × 1회용식기⇒기타가사소모품(539)
502	컵	SD	◆ 음료를 담기 위한 그릇의 총칭. 흔히 잔이라 함 ○ 컵 ○ 컵받침 ○ 커피잔세트
503	주방용기세트	SD	◆ 500-502 항목중 2개이상 또는 일체의 상품 ¶ 종류별 세트는 각 항목에 분류 ○ 주방용기세트 ○ 홈세트 ○ 찬합세트 ○ 제기
504	쟁반	SD	◆ 음식 등을 담아 나르는 데 사용하는 낮고 평평한 도구 ○ 쟁반 × 소반⇒기타일반가구(479)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505	솥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취사용 기구 ¶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 ○ 솥, 압력밥솥 등 × 전기압력밥솥⇒전기밥솥(481) × 튀김솥⇒냄비(506)
506	냄비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솥(505)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냄비 ※ 냄비: 주로 음식을 끓이고, 튀기고, 삶고, 볶는 데 쓰는 조리기구 ○ 냄비: 튀김냄비, 찜그릇 등 ○ 냄비부품: 냄비꼭지, 손잡이 등
507	주전자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물을 담아 끓이거나 술을 데우고, 그것을 담아 따르는 기구 ○ 주전자(스테인레스, 법랑, 사기, 양은 등)
508	프라이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을 두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음식을 지지거나 부쳐 만드는 ○ 프라이팬 × 전기후라이팬⇒기타취사용전기기기(482)
514	칼및수저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밥숟갈, 밥수저 등을 조사 ○ 칼: 식칼, 과일, 채칼 등 ○ 숟가락: 밥숟갈, 밥수저 등 ○ 젓가락: 밥젓가락 등 × 티스푼, 주걱, 튀김젓가락⇒기타주방용품(519)
519	기타주방용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51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주방용품 ○ 주방용기류: 보온병, 도시락, 계량컵(주방용), 바가지, 만능용기류, 뚝배기, 김치통, 광주리 등 ○ 주방용집기류: 포크, 튀김젓가락, 국자, 주걱, 티스푼, 가위(주방용), 냄비용집게 등 ○ 향아리류: 김치독(개량), 향아리, 향아리뚜껑 등 ○ 식탁용품류: 이쑤시개통, 수저통, 양념통, 간장통 등 ○ 기타주방용품1: 계란절단기, 김말이, 랩걸이, 마늘다지기, 병따개, 김술, 칼갈이, 호일걸이 등 ○ 기타주방용품2: 냄비용받침대, 식기건조대, 조리, 찜틀, 석쇠, 불고기판, 도마, 빙수기 등
520-525	가사잡화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 청소, 재봉 등 가사에 필요한 준내구재 ¶ 식기 및 주방용품은 제외 ¶ 소모품은 제외
520	조명기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용 기기 ¶ 형태는 불문하나 실외조명등은 제외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521	가정용공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들리에, 형광등, 백열등 등 ○ 기타조명:스탠드 등 × 전구⇒전구(526) ◆ 집공사에 사용하는 기구들
522	세탁청소용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공구:드라이버, 망치, 편저, 삽, 톱, 맥가이버칼(다기능), 낫, 부삽 등 ○ 가정용공구세트 × 전기드릴⇒기타가정용기기(499) ◆ 세탁, 청소 등 가사에 필요한 준내구재
525	기타가사잡화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용:빨래건조대(이동용), 빨래집게, 빨래판, 세탁볼, 세탁기세탁망 등 ○ 청소용:빗자루, 쓰레받이, 마포대, 걸레, 수세미, 옷솔, 행주, 구두솔, 센스테이프(먼지제거용테이프) 등 ○ 청소용기:양동이, 쓰레기통, 분무기, 고무장갑 등 ◆ 520-52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가사잡화
526-539	가사소모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취사냉난방용품:얼음팩, 연탄집게, 연탄통(화덕), 온도계, 습도계 등 ○ 기타세탁용품:대야, 비누곽, 온수물통 등 ○ 기타청소용품:요강, 휴지걸이, 티슈통, 변기카바 등 ○ 기타재봉용품:바늘, 가위(재봉용), 반진고리, 옷걸이(소형옷걸이), 옷상자(종이), 옷핀 등 ○ 욕실용품류:목욕의자, 샤워커튼, 샤워봉, 세면기, 목욕탕발갈래, 요강, 휴지걸이, 티슈통, 변기카바 등 ○ 기타전기용품:플러그, 플래쉬, 콘센트, 충전기, 전기소켓, 어댑터, 스위치, 전선 등 ○ 아기용품:아기변기, 우유병, 우유병부러쉬 등 ○ 기타가사잡화1:문패, 국기, 부채, 블라인드, 모기장, 대나무발 등 ○ 기타가사잡화2:소화기, 커튼봉, 커튼고리, 자물쇠, 저울, 쥐덫, 체중계 등
526	전구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구 ¶ 실내조명등에 한함 ○ 형광등 전구 ○ 백열등 전구 × 조명기구⇒조명기구(520)
527	화장지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류 ¶ 화장실용 화장지도 포함 ○ 두루마리화장지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530	세탁용세제	ND	○ 티슈:네프킨물티슈,종이수건 등 ◆ 섬유제품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것 ¶ 분말,고체,칠,액체 구분없음
533	부엌용세제	ND	○ 비누류:세수비누,세탁비누가루비누 등 ○ 세탁세제:하이타이,드라이크리닝세제 등 ○ 섬유용샴푸류:울샴푸,섬유린스,섬유표백제,섬유정전기방지제 등 × 청소용세제⇒부엌용세제(533) × 샴푸밋린스⇒샴푸밋린스(843) ◆ 일상생활에서 식기,식품 및 주거용품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것 ¶ 분말,고체,칠,액체 구분없음 ¶ 청소용세제도 포함
534	살충방충제	ND	○ 식기,식품용세제:트리오(상표) 등 ○ 청소용세제(주거용세제):욕조용세제,변기용세제 등 × 세탁용세제⇒세탁용세제(530) ◆ 섬유 및 음식 등에 대한 해충 및 해로운 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 형태 구분없음
535	건전지	ND	○ 쥐약,모기약,좀약,쌀벌레약,바퀴벌레약 등 × 전기살충기기:해충퇴치기,훈증기(모기향)⇒기타가정용기기(499) ◆ 각종 범용 건전지를 조사
536	쿠킹호일	ND	○ 건전지 × 카메라용건전지⇒카메라(744) × 휴대폰용건전지⇒기타통신(829) ◆ 취사용 쿠킹호일을 조사
539	기타가사소모품	ND	○ 쿠킹호일 × 랩⇒기타가사소모품(539) ◆ 520-53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가사소모품 ○ 방향제:방향제,방습제,습기제거제,가습기메이트(세균방지,물때방지),청정(화장실용) 등 ○ 비닐봉지류:랩,비닐,비닐봉지,랩고무줄,비닐카바 등 ○ 기타취사냉난방소모품:드라이아이스,성냥 등 ○ 기타청소소모품:염산,접착제,윤택제,매직블러 등 ○ 일회용품:도시락(일회용),수저(일회용),은박접시,이쑤시개 등 ○ 기타세탁소모품:구두약 등 × 휴대용라이터⇒기타장신구(879)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540-559	침구및직물제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침에 필요한 용품 및 직물용 제품 ¶ 전기가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
540	이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잘 때 몸에 덮거나 바닥에 깔아 몸을 보호하는 것 ¶ 유아용은 제외 ○ 이불,요,담요(모포) 등 × 유아용이불⇒기타침구류(549) × 침낭⇒등산납시용품(755)
544	깔개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거나 누울 자리에 까는 물건 ¶ 재료 구분없음 ○ 양탄자,카펫,돗자리,방석,쿠션 등
549	기타침구류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0-54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침구류 ○ 유아용침구류:포대기 등 ○ 이불커버:이불커버,모포커버 등 ○ 솜:면화솜,화학솜 등 ○ 베개류:베개,베개잇,베개속(메밀껍질) 등 ○ 침대관련용품:요뒹게,침대시트 등 ○ 매트리스류:매트리스,에어매트 등 ○ 기타침구류 등 × 방석,쿠션⇒깔개(544)
550	수건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이나 몸에 묻은 수분이나 땀을 닦는 데 쓰는 무명실로 보풀보풀하게 짠 직사각형의 면포 ○ 수건:미용수건,목욕수건 등 ○ 때수건 ○ 손수건
552	커튼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의 창에 치거나 칸막이로서도 사용되는 것 ¶ 발은 제외 ○ 커튼,버티컬,블라인드 등 × 발⇒기타실내장식품(569)
559	기타직물제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55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제품 ○ 보:식탁보,책상보,전화받침대(직물제품),선풍기보관보,옷보관보 등
560-569	실내장식품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실내에 비치된 비품으로 장식을 겸한 것 또는 감상용 비품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560	장식용시계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구입한 서예 및 그림, 도자기 등 ⇒ 기타재산구입(926) ◆ 장식용 시계를 조사 ○ 벽시계, 탁상시계 등
569	기타실내장식품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목시계 ⇒ 손목시계(875) ◆ 560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실내장식품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해당항목을 취미로 수집할 때 해당항목은 조사제외 ※ 실내장식품: 감상용 또는 장식적 요소가 있는 비품 가구집기가사용품: 단순한 실내비품인 것 교양오락용품: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해당항목을 취미로 수집한 것 ○ 그림류: 동양화, 서양화, 서예작품, 족자 등 ○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장식품 등 ○ 수석및도자기: 수석, 도자기, 불상, 골동품 등 ○ 장식품: 꽃병, 조각, 공예품(장식용) 등 ○ 액자류: 사진틀, 소형액자, 판넬 등 ○ 거울 등 ○ 시트류: 칼라시트, 유리창스티커 등 ○ 기타실내장식품: 크리스마스트리 등 ○ 발: 갈대 또는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실로 엮어서 만든 가리개 × 휴대용손거울 ⇒ 기타장신구(879)
570-579	가사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570	가사사용인급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관련된 일을 가구원 이외의 사람이 행하고 그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지출 ○ 가정부급료 ○ 파출부급료 × 출장요리 ⇒ 식료품가공비(380) × 간병인급료 ⇒ 기타보건의료서비스(689) × 대리운전료 ⇒ 기타개인교통(819) × 심부름센타수수료 ⇒ 심부름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571	보육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및 아동(어린이, 초등학교)의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 가구내, 가구외(놀이방, 어린이집) 구분없음 ○ 보육료(가구방문): 베이비시터 등 ○ 보육료(놀이방) ○ 보육료(어린이집) × 어린이의 유치원교육 ⇒ 유치원(690)
572	청소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를 위해 지불하는 지출 ○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값 ○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오물수거료, 유료화장실이용료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579	기타가사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청소료:폐품수거료,청소대행료 등 × 보일러청소비⇒기타주거서비스(429) × 가사용품청소비(수족관청소비)⇒기타가사서비스(579) ◆ 570-57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가사서비스 ○ 가사용품수리비:가전제품수리비,수족관청소비 등 ○ 가사용품세탁비:쇼파세탁료,쇼파천갈이,솜타는샴 등 ○ 가사용품임차료:비데임차료,정수기임차료 등 ○ 가사용품설치비:에어콘설치비 등 ○ 기타가사서비스:자물쇠 따주는 비용,원예서비스 등 × 해충퇴치,아파트소독비,보일러설치비⇒기타주거서비스(429) × 피복세탁료⇒세탁료(651)
5) 피복신발			
580-659	피복및신발	S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신체에 착용하는 일체의 것), 신발 및 그에 동반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기성복,마춤 구분없음 × 운동 또는 무용 등에 사용하는 신발⇒운동기구및용품(756) × 운동 또는 무용 등에 사용하는 피복⇒운동복(758)
580	한복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韓民族)의 고유한 의복 ◆ 모든 한복을 조사 ¶ 외의,내의 구분없음 ○ 한복:남자한복,여자한복,어린이한복 등 ○ 개량한복 × 버선⇒양말(630)
583	외의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겉에 입는 옷 × 한복⇒한복(580) × 스웨터⇒스웨터(604)
	남자용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풍의 남자용 의복 ¶ 어른용만 조사 ○ 기성양복:정장,재킷,예복 등 ○ 마춤양복 × 학생용 교복⇒학생복(589)
	여자용양장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풍의 여자용 의복 ¶ 어른용만 조사 ○ 기성양장복:정장,재킷,예복,원피스,투피스,쓰리피스,드레스 등 ○ 마춤양장 × 학생용 교복⇒학생복(589)
	코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용양복 및 여자용양장복의 겉옷 ¶ 모피제품도 포함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학생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치코트(바바리):어깨덜개가 달린 더블형 방수코트 ○ 하프코트:반(半)코트라고도 하며,상반신에 입는 것 ○ 스프링코트:춘추용 코트라고도 하며,춘추복 위에 입는 코트 ○ 레인코트:방우용 코트 ○ 오버코트:겨울의 방한코트로서 보통 외투 ○ 톱코트 또는 토퍼:방한용의 상반신 코트 ○ 더스트 코트 또는 더스터:먼지를 막기 위한 코트 × 학생용 교복코트(학생복)⇒학생복(589) ◆ 학교에서 지정하거나 학생용으로 기입된 옷
	아동용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학생복) ○ 코트(학생복) ○ 체육복(학생용) ○ 유치원복(학생복) ○ 교련복(학생복) × 교복용셔츠⇒스웨터밋셔츠 × 교복용타이⇒넥타이(684) ◆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의
	점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의:아동용 정장,코트,잠바 등 ○ 치마바지:아동용 바지,치마 등 ○ 유아용외의:베이비복 등 ◆ 운동량이 풍부하고 품이 넉넉한 활동적인 옷옷 ¶ 남여 구분없음 ○ 점퍼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랫도리에 입는 옷 ¶ 남여 구분없음 ○ 바지 ○ 청바지 ○ 반바지
	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옷에서 허리에서 다리 부분까지 늘어지는 옷 ○ 치마
	기타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0-59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외의 ¶ 유아,아동,어른 구분없음 ○ 제복(학생복 제외):예비군복,민방위복 등 ○ 조끼류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600	스웨터및셔츠	SD	○ 작업복 ○ 기타외의:임신복,홈드레스,모시옷,비옷(우비) 등 × 편물조끼 ⇒스웨터(604) ◆ 스웨터 및 셔츠를 조사 ※ 스웨터:편물로 된 상의(上衣) 셔츠:상반신에 입는 서양풍의 옷 ◆ 남자가 재킷과 내의 중간에 넥타이를 결들여 입는 남성용 중의(中衣) ¶ 학생용도 포함
	와이셔츠		○ 와이셔츠 ◆ 남자가 양복 상의와 와이셔츠 대신에 입는 여름용 남방(南方)풍의 셔츠 ¶ 반소매,민소매도 포함
	남방셔츠		○ 남방셔츠 ◆ 여성용 상의(上衣) 블라우스
	블라우스		○ 블라우스 ◆ 어깨선이 일직선으로 된 모양(T)의 셔츠 ¶ 남녀 구분없음
	티셔츠		○ 티(T)셔츠 ◆ 편물로 된 상의(上衣) ¶ 남녀 구분없음
	스웨터		○ 가디건 ○ 니트,스웨터,편물조끼 등
610	내의	SD	◆ 주로 안(內)에 입는 옷(衣) ¶ 남녀노소 구분없음 ¶ 한복용 내의는 제외 ◆ 남자용, 여자용, 어린이용 내의를 조사 ○ 내의:런닝셔츠,메리야스 등 ○ 언더셔츠:속옷,팬티 등 ○ 여성용보정의류:브래지어,브라슬립,올인원,거들,코르셋,웨이스트니퍼,히프패드 등 ○ 아동용내의 ○ 유아용내의:베이비내복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시례명
620	잠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잘 때 입는 옷 ¶ 남자용, 여자용, 아동용 잠옷을 조사 ○ 잠옷, 파자마 등
	직물및실류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피복재료가 되는 천 실 :직물의 재료 ¶ 단추,지퍼,뚝딱단추 등 피복부속재료도 포함
	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복재료가 되는 천 ○ 옷감:한복지,양복지,양장지 등 ○ 안감지
	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지퍼, 단추 등 직물을 연결해주는 재료 ¶ 단추,지퍼,뚝딱단추,커프스단추 등 피복부속재료도 포함 ○ 실:뜨개실,재봉실,털실,자수용실,수예용실 등 ○ 기타실류:지퍼,단추,털실,뚝딱단추,커프스단추,고무줄(옷용) 등
630	기타피복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말,모자,넥타이,장갑 등의 기타 피복류
	양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또는 무용 등에 사용하는 피복⇒운동복(758) ◆ 방한을 위하여 또는 예의로 발에 신는 것 ○ 양말:양말,긴양말 등 ○ 기타양말:버선,타이즈,덧버선,아동용스타킹 등 × 스타킹(어른용)⇒스타킹(633)
	스타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어른용만 조사 ○ 스타킹
	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용스타킹⇒양말(630) ◆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 ¶ 재료 구분없음 ○ 모자 × 운동모자⇒운동복(758) × 삼푸모자⇒기타이미용용품(859)
	넥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 또는 깃 둘레에 감고 여분을 앞부분에 늘어뜨리는 띠나 끈 모양의 장식품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640	기타피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타이 ○ 나비넥타이 ○ 교복용넥타이 ◆ 630-63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피복류 ○ 장갑류:면장갑,가죽장갑,털장갑 등 ○ 목에두루는것:목도리,머플러,스카프 등 ○ 허리띠류:벨트(혁대),허리띠장식,허리띠,멜빵 등 ○ 가운류:목욕가운,수의,쇼울 등 ○ 유아용피복:출산의류세트,아기무릎보호대,아기포대기 등 ○ 앞치마류:앞치마 등 ○ 기타피복류:턱받이,토시,기저귀커버,복대 등
	신발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부분의 보호와 장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 구두,샌들 등 신발류를 조사
	구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등을 덮는 폐쇄형식의 신 발등을 덮지 않는 샌들과 같은 개방형 신과 구별 ¶ 남녀 구분없음 ○ 구두:하이힐,부츠 등 ○ 슈즈:케미슈즈 등 × 어린이용 구두⇒아동화(642) × 샌들⇒기타신발(649)
	아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부터 초등학교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신발중 운동화외에 모든 신발 ○ 어린이용 구두, 샌들, 슈즈, 장화 등 × 운동화⇒운동화(643)
	운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굽이없이 바닥을 고무창으로 하여 주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 ¶ 남녀노소 구분없음 ○ 운동화 ○ 학생용운동화 ○ 체육관신발 ○ 스니커즈: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신발 × 특정 운동용 신발⇒운동용품(757)
	기타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0-64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신발(신발부속품도 포함) ○ 샌들:주로 발바닥 보호를 위해 신는 신으로 발등은 끈이나 벨트를 이용해 발바닥 부분에 고정 ○ 슬리퍼:슬리퍼(실내용),슬리퍼(실외용) 등 ○ 실내화:실내화(어린이용),실내화 등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650	<p>피복및신발서비스</p> <p>재봉및수선료</p> <p>세탁료</p> <p>기타피복및신발서비스</p>	S	<p>○ 기타신발:예비군화,안전화,고무신,장화,털신 등</p> <p>○ 신발부속품:신발갈창,신발끈 등</p> <p>× 아동용 기타신발류⇒아동화(642)</p> <p>◆ 『피복및신발』로 분류된 상품의 관련 서비스</p> <p>◆ 『피복및신발』로 분류된 상품의 재봉 또는 수선을 위해 지출한 금액</p> <p>¶ 피복및신발의 변형이 발생하거나 보형물이 삽입된 경우</p> <p>○ 재봉료:피복및신발이 보형물이 삽입된 경우</p> <p>○ 수선료:피복및신발이 수선된 경우</p> <p>○ 재단료:피복및신발이 변형이 발생한 경우</p> <p>○ 편물공임</p> <p>◆ 『피복및신발』로 분류된 상품의 세탁을 위해 지출한 금액</p> <p>¶ 세탁 및 건조,다림질,얼룩제거,주름제거,방수처리,염색처리,풀먹임 등을 조사</p> <p>¶ 피복및신발이 변형이 없는 경우</p> <p>○ 세탁료:드라이크리닝,빨래방세탁료 등</p> <p>○ 염색료:구두염색료,의복염색료 등</p> <p>○ 다림질</p> <p>○ 구두닦는샴</p> <p>◆ 650-65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피복및신발서비스</p> <p>○ 기타피복및신발서비스:피복및신발임차료 등</p> <p>× 예복임차료⇒관혼상제비(897)</p>
6) 보건의료			
660-689	보건의료	D,ND ,S	<p>◆ 사람의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p> <p>¶ 동물용약제 및 살충제 등은 제외</p> <p>¶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지불 금액</p>
660-669	의약품	ND	<p>× 건강보험료(구,의료보험료)⇒건강보험료(906)</p> <p>◆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p> <p>¶ 동물의약품은 제외</p> <p>※ 의약품:사람 또는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멸,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p> <p>의약외품:사람 또는동물의 질병의 치료,경멸,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p>
660	인삼	ND	<p>◆ 오가피과 인삼속식물</p> <p>¶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인삼제품류)은 제외</p>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서례명
661	한약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삼:수삼을 햇볕,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 수삼:말리지 않은 인삼 ○ 태극삼: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 ○ 홍삼: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찌서 익혀 말린 것 ○ 인삼잔뿌리(미삼) × 인삼차분말⇒기타차(349) × 인삼넥타⇒기타음료(359) × 인삼제품류⇒건강보조식품(374) ◆ 약사법에서 정한 한약사가 조제하는 모든 한약 및 한약제제 (韓藥製劑) ¶ 시장에서 구입한 한약재도 포함 ¶ 인삼,조제약은 제외 ※ 한약: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집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질단 또는 정제된 생약 한약제제: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 한약:한약토룡환,우황청심원,쌍화탕(한의원에서 제조),한약(인삼과 배합) ○ 한약재:한약에 들어가는 재료 ○ 보약(한방용):인체의 생리기능의 부조현상에서 오는 신체의 허약상태를 도와주는 약물 × 개소주,흑염소 등 한약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약화된 음식⇒건강보조식품(374)
663	양약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가 조제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제제 (韓藥製劑) ¶ 알약,드링크 등 형태 구분없음 ¶ 단 조제약은 별도 ○ 감기약:감기약,해열진통제 등 ○ 위장약:위장약,소화제,소화위장약,정장제,간장약 등 ○ 소독약:머어큐롬,소독약 등 ○ 피부과:연고,땀띠분,고약,약용크림,습진약,무좀약,티눈약,여드림치료제 등 ○ 영양제:영양제,비타민류 등 ○ 보조약:수면제,신경안정제 등 ○ 항생제:항생제 등 ○ 이비인후과약:용각산(상표) 등 ○ 안과약:안약 등 ○ 치과약:진통제,치약(약용) 등 ○ 모발약:염색약,모발력(탈모방지,육모,양모효과) 등 ○ 피로회복제:박카스(상표),숙취해소제,몸살약 등 ○ 약품종합세트 ○ 기타약:구충제,뜸,멀미약,피임약,과스,관장약,여성청결제,링거액,구강세정제 등 × 살충방충제(모기약,취약)⇒살충방충제(534)

부 호	항 목 명	내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669	조제약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포함된 약(약사 및 한약사가 조제) ¶ 연고를 구입할 때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제약
941	본인부담금 (조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약제비계산서)에서 비급여 약제비 및 기타전액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처방의약품비)
942	공단부담금 (조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약제비계산서)에서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처방의약품비)
670-679	보건의료용품기 구	D,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 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 부품 및 부속품도 포함
670	보건의료용소모 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 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비내구재 및 소모품 ○ 의상소모품: 반창고, 밴드, 붕대, 안대, 탈지면, 가제, 마스크 등 ○ 기저귀류: 기저귀(대인용 포함), 생리대 등 ○ 치료동물: 거머리, 벌 등 ○ 금연용품: 금연담배, 금연초 등 ○ 의약수액: 콘택트렌즈보존액, 콘택트렌즈세척액, 식염수 등 ○ 기타소모품: 치실, 콘돔, 주사기(1회용), 임신테스트시약, 산소, 공갈젓꼭지 등 × 기저귀커버 ⇒ 기타피복(639)
671	안경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눈 앞에 착용하는 것 ¶ 보호안경도 포함 ¶ 도수유무에 상관없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경사가 조제 및 판매한 안경을 조사 ※ 안경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정안경과 보호안경의 두 종류로 크게 구별 ○ 교정안경: 근시안경, 원시안경(돋보기) 등 ○ 보호안경: 선글라스(시력보호용) 등 ○ 안경부품: 안경렌즈, 안경테 등 × 장식용안경(선글라스 등) ⇒ 기타장신구(879) × 수영안경 ⇒ 운동복(758)
672	콘택트렌즈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구(眼球)의 전면에 렌즈를 직접 밀착시켜 좋은 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 콘택트렌즈(하드, 소프트, 1회용 등)
679	기타보건의료기 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70-67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보건의료용품기구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680-689	보건의료서비스	S	<p>※ 보건의료용품: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내구재 및 준내구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義肢):의수,의족,의치 등 ○ 보조장비:휠체어,보청기 등 ○ 소독기구:콘택트렌즈소독기,수유소독기,썩찜기 등 ○ 계측기구:체온계,혈압계 등 ○ 기타기구:산소통,옥돌베개,유축기,유아용투약기,유아용코흡입기 등 × 육체미운동기구(헬스기구)⇒운동기구및용품(756) <p>◆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p>
680	한방진료비	S	<p>◆ 한의사의 진료에 기초를 둔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p> <p>¶ 한의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행위 포함</p> <p>¶ 한방병원 입원치료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외래진료비(한의원) ○ 진찰료(한의원) ○ 침술비 ○ 한방입원치료비(한의원) ○ 한방물리치료비(한의원) ○ 기타한방진료비
951	본인부담금 (한방)		<p>◆ 한방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p>
952	공단부담금 (한방)		<p>◆ 한방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p>
681	병원외래진료비	S	<p>◆ 의사의 진료에 기초를 둔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p> <p>¶ 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행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비(병원) ○ 진찰료(병원) ○ 물리치료비(병원) ○ 기타진료비 × 병원입원치료비⇒병원입원치료비(682) × 치과진료비⇒치과진료비(683)
953	본인부담금 (외래)		<p>◆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p>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954	공단부담금 (외래)		◆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682	병원입원치료비	S	◆ 병원 입원중에 청구된 모든 금액(단 한방병원은 제외) ¶ 치료비, 입원비, 약제료, 식사대, 문서료 등도 포함 ¶ 출산을 위한 입원시 신생아에 관계된 비용도 포함 ○ 병원입원비 ○ 병원치료비(입원중) ○ 출산입원료 × 산후조리원⇒기타보건의료서비스(689)
955	본인부담금 (입원)		◆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입원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956	공단부담금 (입원)		◆ 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입원진료비계산서)에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683	치과진료비	S	◆ 치과 의사의 진료비 ¶ 치과병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행위 포함 ○ 치과병원진료비(병원) ○ 치과병원진찰료(병원) ○ 치과병원물리치료비(병원)
957	본인부담금 (치과)		◆ 치과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958	공단부담금 (치과)		◆ 치과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689	기타보건의료서비스	S	◆ 680-68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용품기구수리비:보건의료기구수리비,안경수리비 등 ○ 이용료:엠블런스사용료,응급환자수송차량이용료(119) 등 ○ 임차료:의료기구임차료 등 ○ 기타서비스:주사농은대가의수고비,한약달이는삿,안마(병원),지압료(병원) 등 ○ 기타의료원:접골원치료,산후조리원 등 ○ 간병인급료 ○ 증명서수수료:진단서,입원증명서 등 × 물리치료비(한의원)⇒한방진료비(680) × 물리치료비(병원)⇒병원외래진료비(681)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959	본인부담금 (기타)		◆ 기타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금』에 해당 하는 내역을 기재
960	공단부담금 (기타)		◆ 기타병원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비용(외래진료비계산서)에서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내역을 기재
7) 교 육			
690-729	교육	SD,N D,S	◆ 교육기본법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상품 및 관련 서비 스에 대한 지출 교육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활동(학원교습 및 개인교습)도 포함 ¶ 학생의 교육용구로 주로 사용하는 문구류도 포함 ※ 학생:학교에 재학중인 자 (예외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입시학원에 다니는 자도 포함)
690-699	납입금	S	◆ 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학교에 납부하는 제 경비 ¶ 기타교육비(학교경비,여행경비,기부금 등)는 제외 ○ 입학금:입학금 ○ 수업료:수업료,납입금 등
690	유치원	S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유치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 유치원 ×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보육료(571) × 영유아가 다니는 학원⇒예체능계학원(707)
691	초등학교	S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초등학교·공민학교에서 받은 교 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 초등학교: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공민학교: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 한 학교교육 ○ 초등학교 납입금
692	중학교	S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중학교·고등공민학교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 중학교: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게 교육 ○ 중학교 납입금
693	고등학교	S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받 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695	전문대학	S	<p>※ 고등학교: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 고등기술학교: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1~3년제)</p> <p>○ 고등학교 납입금</p> <p>◆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중 4년제 미만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p> <p>※ 대학구분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등으로 분류</p> <p>○ 전문대학(초급대학) 납입금</p>
696	국공립대학	S	<p>◆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중 4년이상의 과정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및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만 조사 ¶ 조기졸업도 포함</p> <p>○ 국공립대학 납입금</p>
697	사립대학	S	<p>◆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사립 고등교육기관중 4년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만 조사 ¶ 조기졸업도 포함</p> <p>○ 사립대학 납입금</p>
698	대학원	S	<p>◆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중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 대학원대학도 포함</p> <p>○ 대학원 납입금</p>
699	평생교육원	S	<p>◆ 평생교육시설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p> <p>※ 평생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 학교형태:평생교육원,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p> <p>○ 부설형태:학교부설,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등</p> <p>○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p>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700-704	교재비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통학하는 자가 사용하는 교과서 및 교육에 필요한 학습교재로 사용하는 서적류에 대한 지출 ¶ 서적류에 디스크 및 테이프가 결합된 학습용교재도 포함 ¶ 지도방문비가 포함된 것은 보충교육비로 조사
700	중고등학교교과서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서적류 ¶ 무상으로 제공받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교과서 ○ 고등학교교과서 ○ 기타교과서:방학책 등 ×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유치원·초등학교학습교재(703)
702	기타학교교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에서 교과서대용으로 사용하는 교재로 사용하는 모든 서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교재 ○ 대학교재 ○ 대학원교재 ○ 평생교육원교재
703	유치원초등학교 학습교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에서 학습참고교재로 사용하는 서적류 ¶ 교재외에 교육지도방문비가 포함된 경우는 보충교육비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학습지:유치원·초등학교 ○ 일일공부지:유치원·초등학교 × 보습학원에서 구입하는 교재⇒입시및보습학원(706) × 서적류를 제외한 학습용구⇒기타문구류(729)
704	중고등학교참고서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교과서의외에 학습참고교재로 사용하는 서적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서:참고서,문제집,수련장(중학교·고등학교) 등 × 방학책⇒중고등학교교과서(700)
706-719	보충교육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교육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습활동(학원교습 및 개인교습)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 2가지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시간배정이 많은 교육으로 분류 ※ 예외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입시학원에 다니는 자도 포함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학원⇒기타강습료(784)
706	입시및보습학원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학원 또는 보습학원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조사(교재비 포함) ¶ 학원수업료,통신교육의 침삭지도의 비용(교재비 포함)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707	예체능계학원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학원 ○ 보습학원 × 개인과의교습 ⇒ 개인교습비(715) ◆ 70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학원의 보충교육
714	독서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능계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학원, 무용학원, 발레학원 등 ○ 체육계학원: 태권도학원, 격투기학원, 수영학원 등 ○ 기능학원: 컴퓨터학원, 바둑학원 등 × 개인과의교습 ⇒ 개인교습비(715) ◆ 학생의 교육관련시설인 독서실, 고시원, 도서관 등의 이용료(별도의 교습은 없음)
715	개인교습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실: 독서실비, 독서실정기권 등 ○ 고시원 ○ 도서관 × 학생이 아닌 자가 독서실, 고시원, 도서관 등을 이용한 경우 ⇒ 기타교양오락시설이용료(779) ◆ 706-707 항목에 분류되는 보충교육을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교육받은 경우를 조사
719	기타교육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과의교습 ○ 보습과의교습 ○ 예체능계과의교습 ○ 그룹과의교습 ◆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납입금 등)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학교에 납부하는 제경비 ○ 학교경비: 학급비, 시험비, 프린트물요금, 학교잡부금, 학회비, 특별활동비, 월동난방비, 운동화경비, 사물함(학교에서단체로구입) 등 ○ 여행경비: 소풍비,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적립금, MT비, 졸업여행비, 현장학습비 등 ○ 기부금: 기부금(현물포함), 학교급식시설후원금, 사은회비 등 ○ 기타경비: 졸업앨범비, 대학생논문비, 졸업식가운, 피아노대회참가비, 성악경연대회참가비, 진학원서대 등
720-729	문구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학생이 교육목적에 사용하는 문구류 등을 조사 ¶ 학생, 학생이외 구분없음 ¶ 사무용품도 포함
720	필기회화용구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구 및 회화용구 조사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722	종이문구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구: 연필, 샤프펜슬, 메모리펜, 매직펜, 볼펜, 볼펜심, 사인펜, 형광펜, 색연필 등 ○ 회화용구: 그림물감, 유화물감, 크레용, 파스텔, 도화연필, 수채화 도구, 유화도구, 포스터칼러, 파스텔, 크레파스 등 × 종이문구류이외에 사용하는 필기류(백묵)⇒기타문구류(729) ◆ 종이 문구류를 조사 ※ 종이문구류:종이에 인쇄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를 필요로 한 경우 기타인쇄물:종이에 인쇄된 내용이 중요시되는 경우 ○ 노트류:공책,바인더 등 ○ 용지류:원고지,편지지,모눈종이,갠지,화선지 등 ○ 포장지 등 ○ 봉투류:편지봉투,기타봉투 등 ○ 회화용지류:스케치북 등 ○ 앨범:사진첩,명함첩 등 ○ 기록장:일기장,수첩 등 ○ 카드류:크리스마스카드,명함,연하장,엽서 등 × 학습지 등 학습용인쇄물⇒기타교재비(705) × 달력,악보등 종이에 인쇄된 내용이 중요시되는 인쇄물⇒기타 인쇄물(739) × 관제엽서와 우표⇒우편요금(825)
729	기타문구류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0-72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문구류 ¶ 구분이 곤란한 단체구입 교육(학습)재로도 포함 ○ 학습교재:개별 품목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단체구입 교육(학습)재로 각종 악기(트라이앵글,캐스터네츠,탬버린 등),콩주머니, 고무줄,빨대 등 ○ 사무용품:파일,화이트보드,도장,인주,집계,책갈피,클립,핀 등 ○ 기타문구류:지우개,풀,자,칼,잉크,지구의 등 ○ 문구보관함:필통,미술화구통,졸업장통 등 ○ 문구부착물:스카치테이프,양면테이프,문구용스티커,압정 등 ○ 칠판관련문구류:흑판,백묵,칠판지우개 등 ○ 문구류서비스:복사비,코팅,인쇄비,책제본료 등
8) 교양오락			
730-789	교양오락	D,SD,ND,	◆ 교양,오락,취미 등의 목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지출
730-739	서적및인쇄물	ND	◆ 일간신문,잡지,서적 및 서적이외의 인쇄물 등을 조사
730	일간신문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뉴스를 비롯한 정보·지식·오락·광고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매일 발행하는 신문 ¶ 정기구독이 아닌 날개 구입도 포함 ○ 일간신문 ○ 스포츠신문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731	잡지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자신문 ○ 어린이신문 × 일간신문이외의 신문⇒기타인쇄물(739) ◆ 호(號)를 거듭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출판물 ¶ 발행주기 구분없음 ¶ 별책,헌책도 포함
733	서적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일간지,주간지,순간지,월간지,계간지 등 ○ 기타잡지:시각표,정보지,TV가이드 등
739	기타인쇄물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서적 ¶ 학교의 교과서 및 학습교재는 교육으로 조사 ○ 단행본:소설,시집 등 ○ 교재:어학교재,운전면허시험문제집,YJC학사교재(학원수강하지않음) 등 ○ 사전류: 백과사전,사전,옥편 등 ○ 문고본:만화책,동화책,전집,총서 등 ○ 기타서적:종교서적,지도책,어린이집책값 등 × 지도⇒기타인쇄물(739) ◆ 730-73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인쇄물 ¶ 학습지등 학습용인쇄물은 기타교재비(705)로 분류 ¶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종이제품(크리스마스카드,연하장,엽서)은 종이문구류(722)로 분류 ¶ 관제엽서와 우표는 우편요금(825)로 분류
740-769	교양오락용품기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류:지도,관광안내도 등 ○ 기타인쇄물:달력,팸플렛,프로그램,악보 등 ○ 기타신문(일간신문외 신문) × 학습지등 학습용인쇄물⇒기타교재비(705) × 별도의 기록이 필요한 종이제품(크리스마스카드,연하장,엽서)⇒종이문구류(722) × 관제엽서와 우표⇒우편요금(825) ◆ 교양,오락,취미 등의 목적에 필요한 용품(준내구재,소모품) 및 기구(내구재)
740-754	교양오락기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오락,취미 등의 목적에 필요한 기구(내구재) ¶ 아날로그,디지털 등의 형태 구분없음 ¶ 부품 및 부분품도 포함
740	텔레비전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을 수신하는 장비 ○ TV:평면TV,액정TV,디지털TV,프로젝션TV,LCDTV 등 ○ 비디오비전(VIDEO+TV) × TV안테나,TV보안기⇒기타교양오락기구(750)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741	오디오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소리를 발생하는 장비 일체 ♣ 스피커, 이어폰, 메모리 등 부착물도 포함 ○ 오디오세트(전축):스테레오, 콤포넌트, 카세트테크, CDP, 튜너 등 ○ 라디오:라디오, 카세트라디오 등 ○ 오디오부품:오디오스피커, 이어폰 등 ○ 휴대용오디오:마이마이(상표), 녹음기, 휴대용CDP 등 ○ 기타오디오:MP3플레이어, 녹취기 등 × CD음반, 음악테이프⇒기타디스크및테이프(761) × 헤드폰⇒기타취미오락용품(769) × 자동차용 카스테레오⇒부품및관련용품구입(813)
744	사진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촬영을 위한 광학기기 ○ 카메라:아날로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 ○ 카메라부품:카메라렌즈, 카메라삼각대, 카메라플래시, 카메라전지 등 × 일회용카메라 및 필름⇒필름(763)
745	캠코더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메라(camera)와 리코더(recorder)의 합성어로, 녹화 재생 기능을 갖춘 비디오 카메라 ○ 캠코더:아날로그캠코더, 디지털캠코더 등 × 캠코더용 디스크 및 테이프⇒기타디스크및테이프(761)
746	V C R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R:비디오 카세트 녹화기(video cassette recorder) ※ 음향기기용 재생장치는 플레이어(player)라 하고 컴퓨터용 재생장치는 드라이브(drive)라고 함. ○ DVD player:digital versatile disc player ○ LDP:laser disc player ○ VCR:video cassette recorder ○ VTR:video tape recorder × VCR용 미디어(디스크 및 테이프)⇒기타디스크및테이프(761)
748	컴퓨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관련기기 ○ 컴퓨터본체:컴퓨터본체, 일체형PC 등 ○ 컴퓨터부품: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CD-ROM드라이브, 메모리(MEMORY) 등 ○ 컴퓨터부분품: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스캐너, 마우스, 케이블 등 ○ 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소프트웨어비용, CD-ROM(교육용제외), 게임CD 등 × 공CD, CD-RW, 디스켓 등의 소모품⇒컴퓨터용디스크및테이프 × 마우스패드, 프린터잉크, 보안기 등의 소모품⇒기타교양오락용품(769)
749	노트북컴퓨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쉽도록 만든 컴퓨터 ○ 노트북PC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750	기타교양오락기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PC ○ 팜PC × PDA⇒기타통신(829) ◆ 740-74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교양오락기구
751	피아노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기기:슬라이드영사기,복사기,전자수첩,타자기,전자계산기 ○ 광학기기:쌍안경,현미경,망원경,천체망원경 등 ○ 기타 교양오락기구 부품:TV안테나 등 ○ 기타 교양오락기구:MC스퀘어 등 × TV대,오디오장,PC책상=>기타일반가구(479) ◆ 건반이 달린 악기(樂器)
752	기타악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노:직립형피아노,그랜드피아노,디지털피아노 등 ○ 오르간 ◆ 75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기,양악기 구분없음 ¶ 전자악기도 포함 ○ 국악기:가야금,거문고,대금 등 ○ 현악기:기타(전자기타),바이올린,첼로 등 ○ 관악기:트럼펫,하모니카 등 ○ 타악기:드럼 등
754	아동용승용물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부품:기타케이스,기타줄 등 × 아동용 학습교재악기(캐스터네츠,트라이앵글 등)⇒기타문구류(729) ◆ 어린이 및 유아용 승용물기구(내구재)
755-758	운동용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 ○ 유아용승용물:보행기,베이비카,승용말 등 ○ 유아용승용물:킥보드,스카이콩콩,삼륜자전거,어린이용자전거(보조바퀴달린것) 등 × 롤러스케이트,롤러브레이드,스노보드⇒운동기구및용품(756) ◆ 운동의 목적에 사용하는 용품(준내구재,소모품) 및 기구(내구재)
755	등산낚시용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 및 낚시에 필요한 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아웃도어용품을 조사 ○ 낚시용구:낚시가방,낚시대,릴 등 ○ 등산(아웃도어)용구:텐트,침낭,등산배낭,버너,코펠,나침반,반합 등 × 등산 및 낚시용 운동복⇒운동복(758)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756	운동기구및용품	SD	<p>◆ 운동용 장비,기구류 및 운동용 신발(야구장갑은 포함) ¶ 운동용구 부속물도 포함</p> <p>○ 축구용구:축구공,축구화 등 ○ 야구용구:야구배트,야구공,야구장갑,야구화 등 ○ 농구,배구용구:농구골대,농구공,배구공 등 ○ 탁구,테니스용구:테니스라켓,테니스공,탁구라켓,탁구공 등 ○ 골프용구:골프채,골프공,골프화 등 ○ 스키용구:스키판,스키폴대,스노보드 등 ○ 스케이트용구:스케이트화,롤러스케이트,롤러브레이드,스케이트보드 등 ○ 검도용구:죽도,검도동체,펜싱펜,검도장갑 등 ○ 기타용구:아령,펜싱펜,줄넘기,홀라후프,볼링공,볼링화,오리발 등 ○ 건강운동기구:런닝머신,역기,만보기,스텝워치 등 × 쿼터보드⇒아동용승용물(754) × 운동용 의류⇒운동복(758)</p>
758	운동복	SD	<p>◆ 스포츠전용의 의류 및 기타 피복 ¶ 스포츠와 관련없는 무대용의상(발레복)도 포함 ¶ 양말,모자,장갑 등의 기타의류도 포함</p> <p>○ 의류:각종운동복,각종도복,수영복,에어로빅복,무용복,발레복 등 ○ 등산납시의류:등산복,납시복 등 ○ 기타피복:운동복에 딸린부속물,운동용모자,운동용양말,무릎보호대 등 × 야구장갑⇒운동기구및용품(756) × 학생체육복⇒학생복(589)</p>
760-769	교양오락용품	SD	<p>◆ 교양,오락,취미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용품(반내구재 및 비내구재)</p>
760	컴퓨터용디스크및테이프	SD	<p>◆ 각종 컴퓨터용 디스크 및 테이프를 조사</p> <p>○ CD(컴퓨터용):공CD-R,공CD-RW 등 ○ 플로피디스크류:컴퓨터용 플로피디스크,ZIP플로피디스크 등 × 컴퓨터이외에서 사용하는 음반CD 및 테이프⇒기타디스크및테이프(761)</p>
761	기타디스크및테이프	SD	<p>◆ 760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각종 디스크 및 테이프 ¶ 내용수록,미수록 구분없음</p> <p>○ CD(오디오용):CD(레코드판) 등 ○ LP(레코드판)중고포함 ○ 테이프(오디오용):빈카세트테이프,녹음된카세트테이프 등 ○ 테이프(VCR용):빈테이프비디오테이프,녹화된테이프비디오테이프,VTR헤드크리너 등</p>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763	필름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공CD 및 디스켓 ⇒ 컴퓨터용디스크및 테이프(760) ◆ 카메라용 필름을 조사 ¶ 일회용카메라도 조사 ○ 필름 ○ 일회용카메라
764	완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현상료 ⇒ 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 완구(장난감) ¶ 아동용승용물은 제외 ○ 비디오게임기: 비디오게임기, 소프트웨어, 부품및부속품 등 ○ 뽑기(통안에 장난감이 들어있음) ○ 교육적장난감: 몬테소리(상표), 프레벨(상표), 나무쌓기 등 ○ 아기그네, 요람, 판박이, 스티커, 풍선 등 ○ 인형, 레고, 프라모델 등 × 관상용 인형 ⇒ 기타실내장식품(569) × 아동용승용물 ⇒ 아동용승용물(754)
765	꽃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품에 한해 조사 ¶ 조화도 포함 ○ 꽃(생화, 조화 등) ○ 화환 × 원예용 모종, 씨 ⇒ 원예용품(766)
766	원예용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텃밭 및 주말농장과 관계되는 용품도 조사 ¶ 주말농장임대료 등의 서비스도 포함 ○ 모종 및 씨: 꽃씨, 모종, 화초, 분재, 정원수 등 ○ 비료 ○ 농약: 살충제, 제초제 등 ○ 원예기구: 낫, 곡괭이, 부삽, 화초용가위 등 ○ 기타원예용품: 침분, 화분, 정원석 등
767	애완동물및관련용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과 관련된 용구 및 서비스 ○ 애완동물구입: 개, 고양이, 금붕어, 새, 거북, 햄스터 등 ○ 애완동물먹이: 금붕어먹이 ○ 애완동물집: 개집, 새장, 수족관 등 ○ 애완동물약: 구충제, 수족관에 넣는약 등 ○ 애완동물이미용품: 샴푸 등 ○ 애완동물장신구: 개줄, 개목걸이, 애완동물장신구 등 ○ 기타애완동물용구: 의류, 어항온도조절장치, 개껌 등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769	기타교양오락용품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완동물서비스:병원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실요금 등 × 애완동물이 아닌 동물에 대한 지출(사육개 사료)⇒기타잡비(899) ◆ 760-76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교양오락용품
770-789	교양오락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오락용품:바둑판,바둑알,장기,화투,포카카드 등 ○ 취미수집품:우표수집,동전수집,기념주화 등 ○ 컴퓨터용소모품:마우스패드,프린터잉크,보안기 등 ○ 수공예용품:자수,레이스,공예재료(지점토),박공예,지공예 등 ○ 도예용품:도예용찰흙 등 ○ 사냥용구:공기총 등 ○ 성인용품 ○ 기타교양오락용품:헤드폰,레코드판등이 등 × 수예용실⇒실(627) ◆ 교양,오락,취미 등의 목적인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
770-779	교양오락시설이용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오락,취미 등이 목적인 시설의 이용료,관람료,입장료 등의 비용 ¶ 식사가 들어간 것도 포함
770	공연장입장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연극,콘서트,서커스,기타 쇼 등의 입장료
771	방송수신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입장료 ○ 연극입장료 ○ 음악회 및 오페라 입장료 ○ 서커스 및 기타쇼 입장료 ◆ TV수신료,위성방송수신료,케이블TV(CATV) 등의 방송수신료 ¶ 방송수신신청비도 포함 ○ TV수신료 ○ 위성방송수신료 ○ 케이블방송수신료
773	운동경기관람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경기의 관람료 ○ 스포츠관람료:축구,야구,농구,배구 등의 관람료 ○ 기타스포츠관람료:자동차레이스,경마,골프 등의 관람료 × 강습료가 포함된 것⇒운동강습료(783) × 운동경기에서 내기용 표(票)구매(마권)비용⇒기타잡비(899)
774	운동시설이용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의 이용료 ¶ 일정기간 사용후에는 무효화 되는 것 ○ 운동장:축구장,야구장,농구장 등의 이용료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775	P C 방이용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체육관(헬스클럽),볼링장,골프장,탁구장,스케이트장,수영장,사격장,기원 등의 이용료 ○ 운동모임가입:헬스클럽회원권 등 × 강습료가 포함된 것⇒운동강습료(783) × 자산가치의 소멸하지 않는 회원가입비(골프회원권)⇒기타자산증가(929) <p>◆ PC방의 이용료</p>
776	노래방이용료	S	◆ 노래방의 이용료
778	문화시설입장료	S	<p>◆ 미술관,박물관,동물원 등의 전시관 및 사찰,고궁 등의 유적지 입장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의 입장료 ○ 유적지:고궁,사찰,공원 등의 입장료
779	기타교양오락시설이용료	S	<p>◆ 770-77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교양오락시설이용료</p> <p>※ 놀이시설입장료는 유원지안에서 사용한 이용료 유원지: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희·오락·운동·교양 등 레크레이션용으로 제공되는 녹지 놀이시설:유원지 내에 시설되는 동력오락기계를 갖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원지입장료:유원지,에버랜드(상표),해수욕장,놀이터 등의 입장료 ○ 유원지놀이시설이용료1:돌고래쇼,사파리,범퍼카,회전목마 등의 이용료 ○ 유원지놀이시설이용료2:유원지(유람선),보트 등의 이용료 ○ 기타오락시설이용료:오락실,당구장,비디오방이용료,냥시터입장료 등 × 학습시설이용료:고시원이용료,독서실이용료,도서관이용료⇒독서실(714)
781-784	교양오락강습료	S	<p>◆ 교양,오락,취미 등이 목적인 강습료</p> <p>¶ 개인교습,학원교습 구분없음</p> <p>¶ 통신교육,1회에 한한 강습료도 포함</p> <p>¶ 학생의 강습료는 예체능계학원(707)으로 분류</p>
781	자동차운전교습비	S	<p>◆ 운전학원의 교습비</p> <p>¶ 도로주행비도 포함</p>
782	어학강습료	S	◆ 영어회화,일어회화 등의 어학에 관련된 강습료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783	운동강습료	S	<p>◆ 운동강습료</p> <p>○ 스포츠강습료:수영,테니스,탁구,헬스클럽 등의 강습료</p> <p>○ 격투기강습료:태권도,합기도,검도,권투 등의 강습료</p>
784	기타강습료	S	<p>◆ 781-783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강습료</p> <p>○ 취업적강습료:각종 시험대비 고시학원,공무원학원 등의 강습료</p> <p>○ 학생이 아닌 사람의 입시강습료:입시학원,보습학원 등의 강습료</p> <p>○ 자격증강습료:제빵자격증,중장비자격증,컴퓨터자격증,미용사자격증,요리사자격증 등의 강습료</p> <p>○ 유사운동강습료:발레,댄스,단전호흡,눈체조 등의 강습료</p> <p>○ 음악관련강습료:피아노,기타,바이올린 등의 강습료</p> <p>○ 미술관련강습료:미술,서예 등의 강습료</p> <p>○ 교양적강습료:요리,양재,편물,꽃꽂이,다도 등의 강습료</p> <p>○ 공개강좌:주부교실,노인교실,강연회,청강료 등</p> <p>× 교육시설인 평생교육원의 강습료⇒평생교육원(699)</p>
785-789	기타교양오락서비스	S	<p>◆ 730-784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교양오락서비스</p>
785	단체여행비	S	<p>◆</p> <p>¶ 국내,국의 구분없음</p> <p>¶ 교통비,숙박비 등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p> <p>○ 단체여행비</p> <p>○ 성지순례비</p> <p>○ 해외원정대</p>
787	교양오락기구대여료	S	<p>◆ 교양오락용기구 및 용품의 임차료</p> <p>¶ 연체료 포함</p> <p>○ 비디오테이프대여료</p> <p>○ 신문도서:만화책,잡지,도서 등의 대여료</p> <p>○ 운동용품:스키용품,운동복,볼링화,골프용품,텐트 등의 임차료</p> <p>○ 교양오락용품기구:TV,게임기,자전거,장남감 등의 대여료</p>
788	숙박비	S	<p>◆ 숙박료로 인식될 수 있는 것에 한함</p> <p>¶ 숙박료에 동반하는 서비스료도 포함</p> <p>○ 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콘도 등의 숙박비</p>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789	기타교양오락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숙박시설:산장,방갈로,오두막,별장 등의 숙박비 × 사우나(취침)⇒목욕료(862) ◆ 785-78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교양오락서비스 ○ 교양오락기구수리비:피아노조율,컴퓨터,악기 등의 수리비 ○ 사진비디오:사진(촬영,현상,인화,확대),비디오촬영비 등 ○ 교양오락용품자판기:병원등에서동전을넣고TV시청,사진자판기 등 ○ 기타교양오락서비스:스케이트날같이,테이프녹음비 등
9) 교통통신			
800-829	교통통신	D,SD,ND,	◆ 사람의 이동,물건의 운송,정보의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800-819	교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이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단 화물운송료는 포함) ¶ 물건의 운송은 통신으로 분류
800-809	공공교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운송기관,공공운송시설의 이용요금 ¶ 회수권,정기권 및 정액권도 포함
800	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버스이용금액 및 학교에 통학,사업장에 통근하기 위한 요금 ○ 노선버스:시내버스,고속버스,공항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좌석버스,직행버스 등 ○ 통근통학버스:통근버스,통학버스 등 ○ 버스이용권:회수권(버스용),정기권(버스용),정액권(버스용) 등
802	택시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이용요금 ○ 승용택시:일반택시,모범택시,전세택시,콜택시 등 ○ 승합택시:승합택시,콜밴 등
803	기차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차 이용요금 ¶ 수도권이외의 전철도 포함 ¶ 전세기차도 포함 ¶ 도시지하철 및 수도권전철은 제외 ○ 기차:각종 기차 ○ 기차이용권:정기권(기차용),정액권(기차용) 등 × 도시지하철 및 수도권전철⇒지하철및전철(804)
804	지하철및전철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및 전철 이용요금 ¶ 도시지하철 및 수도권전철만 조사 ○ 도시지하철:서울,부산,대구,인천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05	항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전철 ○ 정기,정액권 ◆ 항공기 이용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국외 구분없음 ○ 항공요금:국내항공요금,국제항공요금 등 ○ 기타항공:헬리콥터,경비행기 등
807	자동차임차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임차료를 조사 ○ 렌트카비용
808	화물운송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스프레스(이사화물),일반화물,택배,퀵서비스 등의 운송료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법이 아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업체의 운송료 ㉠ 보관료도 포함 ※ 물품보관함사용료(지하철역,할인매장등) ○ 익스프레스(이사화물):이사집운반(부대비용포함),사다리차 등 ○ 일반화물:화물운송료,화물보관료,수화물운송료및보관료 등 ○ 퀵서비스 ○ 택배 ○ 기타운송:마차삿,지게꾼삿 등 ○ 운송서비스:물품보관함사용료(지하철역,할인매장등) 등
809	기타공공교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80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공공교통 ○ 기타교통요금:선박요금,카페리요금,보트요금(교통),케이블카요금 등 ○ 시설이용료:공항이용료,공항시설입장료,역입장권 등 × 관광용 유람선 및 보트 이용요금⇒기타교양오락시설이용료(779)
810-819	개인교통	D,SD,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의 구입금액 및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운송기구를 사용할 목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주차비)에 관련된 지출
810	자동차구입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구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차도 포함 ○ 자동차구입 ○ 자동차구입시탁송료 ○ 자동차관련수수료:자동차성능시험수수료 등 × 자동차세⇒자동차세(902) × 자동차등록세,자동차취득세(신규,이전)⇒기타세금(903)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11	기타운송기구구입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바이,농기계,비행기 등 자동차이외의 원동기를 부착한 운송기구의 구입금액 ○ 오토바이:오토바이,스쿠터 등 ○ 기타운송기구:농기계,보트,비행기 등
812	자전거구입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의 구입금액 ○ 자전거구입 × 아동용(유아및어린이)자전거⇒아동용승용물(754)
813	부품및관련용품구입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의 부품 및 관련용품 구입금액 ¶ 카스테레오도 포함 ○ 부품구입:타이어,배터리,백미러,와이퍼,점화플러그,전구 등의 부품 ○ 관련용품구입(자동차용):카스테레오,스노체인,시트,시트커버,실내장식품,세차용구,왁스,워셔액,원격시동장치,카내비게이션,자동차청소기,오토바이헬멧,어린이용의자,화물용고무벨트,펌프(자전거용) 등의 관련용품 × 서비스가 포함된 것(오일(엔진,브레이크)교환,에어컨가스주입)⇒정비및수리비(815)
814	연료비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연료 구입금액 ○ 유류:휘발유,경유,기타유류 등 ○ Gas:LPG,LNG 등
815	정비및수리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의 정비 및 수리 서비스에 관련된 것 ※ 정비:잘못된 곳을 바로잡는 것 수리:고장난 곳을 고치는 것 ○ 자동차:에어컨가스주입,엔진오일교환 등 ○ 자전거수리비 ○ 자동차검사비 ○ 수리를 위한 견인료 × 세차비,광택료,선팅료,보조키제작⇒기타개인교통(819)
816	보험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보험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填補)하는 보험 ※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강제보험 자동차보험:책임보험외에 임의가입보험도 포함 ○ 책임보험료:종합보험료(자동차) 등 ○ 자동차보험료:운전자보험료(자동차) 등
817	주차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주차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시간,장소 구분없음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료(장소구분):공영주차장료,백화점주차료 등 ○ 주차료(시간구분):월간,연간,시간제 등 ○ 주차장임차료,차고지요금 등
818	통행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통행에 지출한 비용 ¶ 도로에 한하여 조사 ○ 고속도로통행료 ○ 고속도로카드 ○ 유료도로요금(통행료)
819	기타개인교통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81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개인교통 비용 ○ 관련수수료: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변경시),자동차말소등록신청 대행수수료,운전면허안전협회비,LPG교육비 등 ○ 기타교통관련서비스:세차비,광택비,선팅비,보조키제작,자동차폐차시 견인요금 등
820-829	통신	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운송,정보이용과 전달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단 화물운송비는 제외) ¶ 국내,국외 구분없음
820	일반전화요금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화기기(일반전화,전보요금,팩시밀리 등)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 설치비,보증금 등의 서비스도 포함 ○ 공중전화:전화요금,공중전화카드 등 ○ 유선전화서비스:전화설치비,전화이전비,전화기기임차료 등 ○ 기타일반전화요금:팩시밀리,키폰,전보요금 등 × 일반전화기기의 구입비용⇒일반전화기기(822) × 인터넷(ADSL 등)이용료⇒인터넷이용료(826) ×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는 일반전화보증금⇒기타자산증가
821	이동전화요금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기기(휴대폰,카폰,PDA 등)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 임차료,개통비,보증금 등의 서비스도 포함 ○ 이동전화요금:이동전화요금,자동차전화기요금,무선호출기요금 ○ 이동전화서비스:가입비,보증보험료,이동전화임차료 등 × 이동전화요금중 이동전화기기의 구입비용 할부금액⇒이동전화기기(823) × 이동전화기,PDA로 사용한 인터넷이용료⇒인터넷이용료(826) ×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는 이동전화보증금⇒기타자산증가(929)
822	일반전화기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화기기(유선전화기,가정용무선전화기,팩시밀리,키폰 등)의 장비구입 비용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23	이동전화기기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화기기:유선전화기,가정용무선전화기,자동응답전화기 등 ○ 기타전화기기:팩시밀리,키폰 등 ◆ 이동전화기기(휴대폰,카폰,PDA,무선호출기 등) 등의 장비구입 비용 ○ 이동전화기기 ○ 자동차전화기(카폰) ○ 이동전화기기의 구입비용 할부금 × 이동전화기기 임차료⇒이동전화기(821)
825	우편요금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표,우편봉투,서류값,소포우편료,항공우편,관계엽서 등에 대한 지출 ○ 우편요금:소포요금,우편요금,항공메일 등 ○ 우편용품요금:우편봉투,엽서(엽서값 포함),우표 등 ○ 우편서비스요금:소포포장비 등 × 종이문구류용 봉투(편지지)⇒종이문구류(722) × 택배⇒화물운송료(808) × 전보⇒일반전화요금(820)
826	인터넷이용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ADSL,케이블,전용선 등)서비스에 청구된 사용료 ¶ 일반전화기기,이동전화기기를 이용한 인터넷(ADSL 등)서비스 ¶ 일반전화요금,이동전화요금에 함께 청구된 인터넷이용료는 분리할 것 ※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사용료를 조사 ○ 인터넷사용료:인터넷기본요금,인터넷데이터전송료,인터넷유료서비스이용료,인터넷전화요금 등 ○ 인터넷관련서비스요금:인터넷가입비,인터넷설치비 등 ○ 인터넷장비료:모뎀임대료 등
829	기타통신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0-82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통신비 ¶ 부품,부속품 구입 및 수리비도 포함 ¶ 햄(HAM)관련비용은 제외 ○ 부품구입:일반전화기안테나,팩스잉크 등 ○ 관련용품구입:휴대폰줄,휴대폰집,휴대폰충전기,휴대폰бат테리,핸즈프리 등 ○ 기타서비스:일반전화기수리비,이동전화기수리비,이동전화기충전비 등 × 햄(HAM)관련비용⇒기타교양오락서비스(789)
10) 기타소비지출			
830-899	기타소비지출	D,SD,ND,	◆ 소비지출중 식료품부터 교통통신까지의 대분류에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830-830	담배	ND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30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 국산,외산 구분없음 ○ 담배
840-869	이미용	D,SD,S	◆ 위생,이미용에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840-859	이미용용품	SD,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이미용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지출 ¶ 어른용,어린이용 구분없음
840	칫솔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약과 더불어 사용되는 구강위생(口腔衛生)의 용구 ○ 칫솔(일회용도 포함) × 전동칫솔⇒전기이미용기구(848)
841	치약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칫솔과 더불어 사용되는 구강위생(口腔衛生)의 용구 ○ 치약(휴대용,일회용 등) ×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용치약⇒양약(663)
842	화장비누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용,세안용인 고체용 비누만 조사 ○ 화장비누(휴대용,일회용 등) ×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용화장비누⇒양약(663)
843	샴푸및린스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루,액체,크림상태의 목욕용,세발용 샴푸 및 린스 ○ 샴푸(휴대용,일회용 등),바디샴푸 등 ○ 린스 × 약국에서 구입하는 비듬제거용 샴푸⇒양약(663) × 두발용 화장품⇒화장품(844)
844	화장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림,로션 등 화장하는 데 쓰이는 모든 것 ¶ 화장품세트도 포함 ○ 기초화장품(청결하게 미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도찰하는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수:스킨로션,바디로션,밀크로션 등 - 크림류:썬크림,핸드크림,영양크림,콜드크림,크린싱크림,메이크업베이스 등 ○ 두발화장품(머리털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어로션,헤어토닉,헤어크림(무스),헤어스프레이,정발료(포마드) 등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48	전기이미용기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이크업화장품(매력을 증진하고 용모를 변경시키는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루분:파운데이션,콤팩트,트윈케익 등 - 입술연지:립스틱,볼연지 등 - 눈썹연필:마스카라,아이샤도우 등 - 미조료(美爪料):메니큐어 등 ○ 남성화장품(남성의 피부를 위하여 사용하는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셰이빙 크림,애프터 셰이빙 로션,남성 로션·크림 등 ○ 향수 ○ 기타화장품:팩,바디샴푸 등 × 약국에서 판매하는 머리염색약,파마약⇒양약(663) × 아기용 분,베이비오일⇒보건의료용품(670) ◆ 전기를 이용한 이미용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식전동기구도 포함
859	기타이미용용품	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용:전기면도기 등 ○ 모발용:헤어드라이어,전기고대기 등 ○ 구강용:전동칫솔,자외선칫솔소독기 등 ○ 전신용:미용사우나기 등 ○ 기타 전기이미용기구 등 × 안마기⇒기타보건의료기구(679) ◆ 840-848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미용용품
860-869	이미용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용구세트:비누치약세트,비누샴푸세트 등 ○ 모발용:가발,머리깎는가위,빗,브러쉬,머리핀,샴푸모자 등 ○ 남성용:면도기(수동),면도날 등 ○ 기타이미용용품:비누곽,손톱깍이,귀이개,족집게,면봉 등 × 여성청결제,발모제,구강세정제⇒양약(662) × 생리대⇒보건의료용소모품(670) ◆ 목욕,이미용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
860	이미용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소 또는 미용실을 이용하고 지출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마료, 맛사지료 등의 서비스요금도 포함
862	목욕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이발소):이발료,면도료,드라이비 등 ○ 미용료(미용실):컷트,파마,세팅,염색 등 ◆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지출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때밀이 등의 서비스요금도 포함 ○ 목욕료 ○ 사우나 ○ 찜질방 ○ 한증막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869	기타이미용서비스	S	<p>◆ 860-86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미용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서비스:안마,지압,마사지 등 ○ 이미용품대여료:가발대여,동전드라이어 등 ○ 이미용품수리비:전기면도기수리비 등 ○ 기타 이미용서비스:문신료,비만관리실 등 × 병원에서의 안마,지압,마사지⇒보건의료서비스(689)
870-880	장신구	D,SD,S	<p>◆ 가방류,우산,장신구 등 신변잡기용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p>
870	가방	SD	<p>◆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게 만든 용구</p> <p>¶ 가죽,비닐,천 등의 재질 구분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방: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게 만든 용구 ○ 핸드백:손에 들거나 팔 또는 어깨에 늘어뜨리는 가방 ○ 숄더백:어깨에 메고 다니는 가방 ○ 기타가방:학생용가방,여행용가방,서류가방(007가방),신발주머니,기저귀가방,쇼핑백(바구니) × 종이백⇒기타장신구(879) × 약기케이스⇒기타약기(752)
873	우산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산 ○ 양산 ○ 비치파라솔
875	손목시계	D	<p>◆ 휴대용 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목시계 ○ 기타시계:목걸이시계,반지시계,허리에차는시계,회중시계(懷中時計)(양복의 포켓 등 품속에 넣고 휴대하는 소형의 시계) ○ 시계줄 × 벽걸이용시계⇒장식용시계(560)
877	귀금속	D	<p>◆ 장식(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브로치 등)용 금,귀금속 및 보석류를 조사</p> <p>¶ 합금여부 구분없음</p> <p>※ 금:황금빛 광택이 나는 대표적인 귀금속</p> <p>귀금속:화폐·장신구·메달·공예품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값비싼 금속류</p> <p>보석류: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이 있어 장식품이 되는 광물 및 가공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 귀금속 ○ 보석류 × 기념주화,메달용 귀금속⇒기타교양오락용품(769)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79	기타장신구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조장신구⇒기타장신구(879) × 축재나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금,보석,귀금속⇒기타재산구입(926) ◆ 870-87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장신구 및 그 부품 ¶ 금,귀금속,보석류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조장신구: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 의류장신구:브로치,명찰(뱃지,완장) 등 ○ 소지품류:지갑,명함지갑,열쇠집,선글라스,안경줄 등 ○ 리분류:리본,헤어밴드 등 ○ 흡연용품:파이프,라이터,성냥,재떨이 등 ○ 기타신변용품:부채,지팡이,손거울,보석상자 등 ○ 장신구부품:가방보자기,우산부품 등
880	장신구서비스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브로치 등)용 금,귀금속 및 보석류⇒귀금속(877) × 금연용품(금연담배,금연초)⇒보건의료소모품(670) ◆ 장신구의 수리비(가공임도 포함),임차료,세탁비 등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신구수리비:시계수리비,우산수리비,손목시계건전지교환 등 ○ 장신구임차료:귀금속대여 등 ○ 장신구세탁비:귀금속세척 등
890-899	잡비	SD,S	◆ 830-880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소비지출
890	경조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의,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장례식)에 지출한 비용 ¶ 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장례식 등에 기부하는 금액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의금(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 ○ 조의금(장례식) × 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장례식 이외의 애경사에 증여금⇒회비및기타교제비(893) × 해당 가구의 애경사에 지출한 비용⇒관혼상제비(897)
891	종교관계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금(교회,성당 등),시주(절,사찰 등) 등 신앙에 관련된 기부 및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금(교회,성당 등) ○ 시주(절,사찰 등) ○ 종교단체회비:교회비,어린이주일학교회비 등 ○ 종교행사참가비:안수기도비,영세비 등 × 여행목적의 성지순례비⇒단체여행비(785) × 종교시설밖에서 사교적회비(수련회)⇒회비및기타교제비
892	종교용품	SD	◆ 염주,위패 등의 신앙에 관련된 용품의 구매 비용

부 호	항 목 명	내 구 성	항 목 분 류 시 례 명
893	회비및기타교제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가,염주,목탁,기타종교용품 등 × 성경책⇒서적(733) ◆ 증여금,회비 및 교제비 등을 조사 ※ 증여금:일반사회의 관행에 의한 자발적인 지출(기부금과 구분) 회비:사회생활상 사교적 목적의 부담금. 교제비:친목 또는 교제적 요소가 있는 회비 ○ 축하금 및 조의금:경조소득을 제외한 돌,생일,입학,졸업,승진,약혼,결혼기념일 등의 축하금 또는 위문금 등의 조의금 ○ 증여금:재산상속(재산분배)금,전별금,사례금(팁),지참금,세배돈,자선단체기부금(자발적),다른 가구에게 주는 일시적인 용돈(조카용돈) 등 ○ 회비및교제비:친목회비,상조회비,동창회비,등산회비,사우회비,찬조회비,자모회비,노조비 등 ○ 친목모임(계)(금전용통목적이 아님) ○ 기타 회비및교제비:절값 등 × 용돈,출장비 등 지출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용도불명의 지출⇒기타잡비(899) × 자발적인 지출이 아닌 반강제적 의미의 부담금⇒각종부담금및기타(909) × 교육비송금⇒교육비송금(911)
894	손해보험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 손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여행보험료 × 주택관련화재보험료⇒화재보험료(421) × 자동차보험료⇒자동차보험료(816)
895	수수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공적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요금 ¶ 복권 등과 같이 상대방이 없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타잡비(899)로 분류 ¶ 자발적인 지출이 아닌 반강제적 의미의 부담금은 각종부담금및기타(909) ○ 문서발급:주민등록 등본발급,비자발급 등 ○ 응시료:국가자격시험 응시료,운전면허시험 응시료,특허출원료 등 ○ 등록비용:등기비용,수입인지대 등 × 부동산 중개수수료⇒기타주거(429) × 은행수수료⇒기타잡비(899)
897	관혼상제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혼상제·백일·돌·회갑·진갑과 관련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 예식에 필요한 용품(청사초롱) 및 서비스(팁)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숙박비,교통비는 제외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899	기타잡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례비(冠): 돌·회갑·진갑 연회(宴會)비용 등 ○ 혼례비(婚): 함값, 예단비, 예식비용, 폐백음식비, 피로연비, 하객 선물비용 등 ○ 장례비(喪): 장의비용 등 ○ 제례비(祭): 제사음식, 묘지관리비, 이장비용, 49제, 벌초비 등 × 돌·회갑·진갑을 제외한 생일잔치⇒식사대(390) ◆ 890-89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잡비(주로 사적인 용돈) ○ 용돈, 출장비 등 지출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용도불명의 지출 ○ 상담서비스료: 법률상담료, 조세상담료, 직업알선료, 맞선료, 복채(점) 등 ○ 응시수수료: 취직원서대, 일반인자격시험응시료, 성격진단테스트비 등 ○ 금융수수료: 신용카드연회비, 은행수수료, 은행금고이용수수료 등 ○ 당첨금이 따르는 표(票) 구매: 마권, 복권, 경품권 매입금, 도박에서 잃은돈(자발적임) 등 ○ 자산관리비: 콘도유지비, 사육개사료 등 ○ 기타잡비: 복조리(설날), 신문광고게재료 등 ○ 기타 용도불명의 지출 × 자발적 지출인 증여금, 회비 및 교제비 등⇒회비및기타교제비 × 공적사무를 제공받고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수수료(895) × 자발적인 지출이 아닌 반강제적 의미의 부담금⇒각종부담금 및기타(909)
11) 비소비지출			
900-912	비소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가구의 자유의지없는 지출 및 소비지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전지출
900-903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직접세 ¶ 간접세는 조사 제외
900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종합소득세: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에 부과하는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매월) - 종합소득세(5, 11월) ○ 퇴직소득세: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환원일시금에 부과하는 소득세 ○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901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재산세: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등의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7월) ○ 종합토지세:토지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10월) ○ 상속세: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902	자동차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자동차세(6,12월)
903	기타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90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조세 ○ 주민세: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등할(8월) - 소득할:근로자(매월),자영자(5,11월) ○ 등록세:일정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 면허세: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총포, 낚시 등) ○ 취득세: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 기타세금:자산재평가세,부당이익세,농지세,공동시설세 등 × 법인세는 조사 제외
904-905	공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공적연금: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
904	일반기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5 항목을 제외한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공적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납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국민연금⇒국민연금(905)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905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기업연금⇒저금(921) × 개인연금보험⇒저축성보험료(922)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공적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한 가지. 노령·질병·사망 등에 대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06-907	사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회보장성격을 가진 법률에 기초하여 납입하는 사회보험료
906	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료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없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907	기타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6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실업보험)료: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납부 ○ 산업재해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으로 납부 ○ 기타사회보험료
908-912	기타비소비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0-90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전적 성격의 비소비지출
908	지급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를 위하여 차입한 돈에 대한 지불이자 ○ 빌린돈에 대한 이자:주택관계빌린돈(080) 또는 기타빌린돈(081)에 대한 이자 등 ○ 할부및외상에 대한 이자:월부및외상(082)에 대한 이자, 카드연체이자 등 ○ 기타부채에 대한 이자:기타부채(089)에 대한 이자, 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등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는 조사 제외 × 주택부금상환금⇒주택부금상환(930)
909	각종부담금및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8,911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비소비지출 ¶ 자발적인 지출이 아닌 반공과적 의미의 부담금 ※ 부담금: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적 급여의무 ○ 부담금:물이용부담금,수익자부담금,운전면허적성검사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경차소유가구),경품당첨후 부가세납부비용 등 ○ 비자발적인 기부금:적십자회비,방위성금,불우이웃돕기성금,자선단체기부금(비자발적) 등 ○ 벌금류:과태료,자동차관련벌칙금,자동차জন인료(불법주차) 등 ○ 손실금:도난금,분실금,휴대폰분실위약금 등

부호	항목명	내구상	항목분류사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자료: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신체·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등 ○ 정산금:착오로 지급된 급여나 출장비의 환불 등
911	교육비송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가구를 위해 교육비보조 성격의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 및 현물도 포함 ¶ 해외송금도 포함 ○ 교육비송금:납입금,교재비,보충교육비 등 송금
912	기타송금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 항목이외에 다른 가구를 위해 생활비보조 등의 송금보조 지출 ○ 생활비송금:교육비 이외의 생활비 등 송금 ○ 기타송금보조
921-939	기타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지출이외의 지출로서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지출을 말함
921-929	자산증가를위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저금의 예입,보험금불입,재산매입 등 자산의 증가를 발생시킨 것
921	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행,우체국,신용금고 등)에 불입하는 예입금 ○ 금융기관(은행,우체국,신용금고 등)의 예금,적금 불입 ○ 기업연금:기업연금,협약연금 등
922	저축성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보험회사 등)에 불입하는 저축성보험의 불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보험료,기업연금보험료도 포함 ※ 개인연금:개인이 재원을 출자한 사적연금 수취금 기업연금:개인,기업 및 단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자한 사적연금 수취금 ○ 보험회사(보험회사 등)에 불입하는 저축성보험료 ○ 개인연금보험:생명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923	계부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의 유통을 목적으로 조직한 모임(계)에 불입한 금액 ○ 계부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계)⇒회비 및 기타교제비(893)
924	유가증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주식,채권,신탁 등)의 매입대금 ○ 유가증권(주식,채권,신탁 등)의 매입대금
925	부동산구입		

부호	항목명	내구성	항목분류사례명
926	기타재산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입대금 ○ 주택의 증축,개축비용 등도 포함 × 중개인 수수료⇒ 기타주거서비스(429) × 부동산 등기비용⇒ 행정·사법수수료(895) × 부동산(토지,주택 등) 취득세⇒ 기타세금(903) ◆ 축재나 일시적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보관하였던 보석,귀금속,골동품,내구재 등의 매입대금
927	빌려준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재산(보석,귀금속,골동품,내구재 등)의 매입대금 ◆ 빌려준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보증금(전세,월세 등)도 포함 ○ 남에게빌려준돈 ○ 보증금: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휴대폰보증금,전화설치보증금 등 ○ 예치금:관리비에치금 등 ○ 가입비:철도카드회원가입비,골프회원권 등
929	기타자산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0-927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산의 증가
930-939	부채감소를위한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 상환,할부및외상으로 변제,월세(전세)보증금 반환 등 부채의 감소를 발생시킨 것
930	주택부금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입 및 임차를 위하여 용자받거나 빌린 돈의 상환금 ○ 주택부금상환금 × 관련된 지급이자⇒지급이자(908)
931	빌린돈갚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0 항목 이외에 가계를 위해 빌린 돈의 상환금 ○ 가계를 위한 빌린돈(부동산매입제외)을 갚은 금액 ○ 마이너스(-)통장 갚은 금액 ○ 가불금상환
932	월부및외상갚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 및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갚은 금액 ※ 할부: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2회이상 분할하여 상환할 것 외상: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에 따른 차입금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일시적으로 상환할 것

부 호	항 목 명	내 구성	항 목 분 류 사 례 명
939	기타부채감소		<p>◆ 930-932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부채의 감소</p> <p>○ 보증채무 상환 ○ 기타부채 상환</p>
990-990	월말현금잔고		<p>◆ 월말에 남은 현금금액</p>
990			
991	전세금월세평가액		<p>◆ 전세로 임차한 주택의 시설 및 노후정도가 유사한 주택을 빌린다고 할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인접가구의 월세액을 참작하여 평가)</p>
992	보증부월세평가액		<p>◆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주택의 시설 및 노후정도가 유사한 주택을 빌린다고 할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 (단, 매월 지불하고 있는 월세는 차감)</p>
993	자가월세평가액		<p>◆ 자가점유주택 및 무상주택으로 임차한 주택의 시설 및 노후정도가 유사한 주택을 빌린다고 할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p>

부 록

1. 가구구분표
2. 산업분류표
3. 직업분류표

부 록

1. 가구구분표

가구 구분	종 류	내 용 설 명	예 시
근 로 자 가 구	공 무 원 (111)	관공서 또는 국·공립병원 및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검사, 국(공)립학교 교원·강사·교수, 국(공)립병원 의사·약제사·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철도여객전무, 개찰원, 통신사, 외교관, 농산물검사원, 임업직연구원 등 중앙관서, 지방관서에서 사무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외 사무 종사자 (112)	개인회사, 상점, 공장, 병원, 사립학교 등에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한전, 협동조합 및 각 공사에 근무하는 자도 포함 함. 단, 법인경영자에 분류된 자는 제외	경리직원, 현장감독, 신문기자, 향해사, 선장 등과 일반기업체 및 공공기업체에서 사무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외판원(고정봉급을 받는 자), 목사

가구구분	종류	내용 설명	예시
근로자가구	생산직	기능공 및 상용근로자 (121)	채탄공, 견습공, 인쇄공, 운전기사(봉급을 받는), 경비원, 수위, 급사, 이용사, 미용사, 청소부, 신문배달부, 수금원, 화물하역부, 판매점원 등
	생산직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2)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 (상점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근로자외가구	자영업자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211)	독립적으로 소규모의 상품제조, 가공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로 영업상사용인이 없는 사람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자 (212)	위의 내용과 동일하며 영업상사용인이 1~4인 이하인 사람
	개인경영자 (220)	독립적인 대규모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사용인 5인이상) 개인조직인 상점, 사업체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규모가 큰 식당주인 및 점주인, 공장주인, 개인병원장 등

가구 구분	종 류		내 용 설 명	예 시
근 로 자 자 외 가 구	법인경영자 (230)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 사용인이 5인 이상 고용 된 법인체 (합명, 유한, 주식회사 및 비영리단 체)의 임원 및 정부기관 의 고위관리	사장, 감사, 이사, 장관, 차관, 도지사, 청장, 국회의원 등
	자 영 자 및 경 영 자 자 유 업 자	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 (241)	자기가 가진 고도의 전 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을 이용하는 독립자영자 로서 피고용자가 없는 사람. ※회사, 단체에 고용된 자는 근로자 가구에 분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조산원, 도안사, 화가, 저술가, 작곡가, 음악평론가, 콘설 턴트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 (242)	위의 내용과 동일하며 피고용자가 1~4인 이하 인 사람	
	무 직 (291)		가구주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연금, 타가구로 부 터의 송금보조, 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가게를 운영 하는 가구	무직자, 실업자, 이자소득 가구, 연금소득가구

2. 산업분류표

산 업	부 호	내 용 설 명	예 시
농 업, 수렵업 및 임업	A	작물생산 및 원예업, 축 산업,복합농업,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보통작물, 채소, 화훼 및 중요 생산업, 과실, 음료 및 향신작 물생산, 과실수재배, 시설작물 재배, 각종육지동물 번식·사육, 양묘업,육림업, 야생식물 및 임 산물 채취업, 벌목업
어 업	B	일반어업, 양식업 및 어 업관련서비스	해면·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원양어업
광 업	C	석탄·원유·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 채굴, 금속광물의 탐사·시굴· 채굴	석탄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 취 및 관련서비스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및 채석업
제 조 업	D	각종 재료에 물리적, 화 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 운 제품을 생산	음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마구 류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코크스, 석유정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금속산업, 조립금 속, 사무기계, 영상 및 통신장 비, 의료, 광학기기 및 시계, 자 동차 및 기타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
전 기, 가스 및 수도사업	E	전력의 발전, 송·배전사 업,가스제조 및 공급, 상 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 정수·공급	전기업, 발전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사업
건 설 업	F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건 축물을 신축·재축·개 축·수리 및 보수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업,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도배 및 실내장식 등 건축마무리 공사업

산 업	부 호	내 용 설 명	예 시
도 매 및 소매업	G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도·소매 활 동, 상품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대리·경매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및 상 품중개업, 각종 소매업
숙 박 및 음식점업	H	숙박 또는 야영공간 및 설비제공, 조제식품 및 음료판매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영 빈관, 하숙, 유스호스텔, 캠프장 시설운영, 음식점, 식당, 간이식당
운 수 업	I	각종 운수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활동 과 창고 및 기타 운수관 련서비스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 송, 공항운영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통 신 업	J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 운반, 배달하는 우편사업, 소포 송달업과 전기 전자식 방 법에 의한 전기통신업	우편업, 소포송달업, 유무선 통신업, 별정 통신업, 부가통 신업, 무선 전화업
금 융 및 보험업	K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 업 금융 또는 보험관련 서비스	한국은행, 일반국내은행, 외국 은행, 어음할인소 및 저축기관, 생명보험, 연금 및 공제업, 상 해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보험, 증권 거래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부동산 및 임대업	L	부동산업, 각종 기계장비,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 비·용품을 임대하는 활 동	부동산임대업·중개업 및 감 정업, 운수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서적임대업, 오락용품임대업, 가구 및 가 정용기기임대업,
사 업 서비스업	M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산업, 연구개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자료처리 업, 데이터베이스업, 연구개발업, 변호사업,

산업	부호	내용 설명	예시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감리사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경영상담업 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N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정부행정 및 공공정책사무, 외무·국방 및 치안행정,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O	초급, 중급 및 상급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교육기관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교습소, 노인학교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P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병원, 의원, 조산소, 수의업, 아동·싱인·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재난구호시설, 재활원, 보육시설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Q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 예술활동, 도서관, 자료실, 박물관, 기타 오락·문화서비스활동	영화 및 비디오제작·배급·운영업, 공연 및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자영예술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R	공공, 사회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 세탁, 이·미용, 장의 등의 서비스 제공	위생 및 폐기물 수집처리, 산업 및 전문가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치단체, 영화방송 및 기타공연산업, 뉴스, 자료제공업, 도서관, 박물관, 운동·경기 및 오락관련산업, 세탁업, 이·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자동차 및 소비용품 수선업
가사 서비스업	S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의 활동	개인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유모, 보모, 운전사, 가정교사, 정원관리원
국제 및 외국기관	T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 공무수행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외국대사관, 기타 외국 지역단체
무직 및 분류불능직	U	이상에 분류되지 않은 산업은 이에 분류	직업이 없는 경우도 포함

3. 직업분류표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p>의회의원 및 고위임원</p>	<p>법령을 제정·비준·개정 및 폐지하고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언하며 정부정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감독하거나 특수이익단체를 대표하여 유사업무를 수행한다.</p>	<p>국회의원, 시도 의회의원,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 중앙 및 지방 고위공무원, 정당·경제단체 등 특수이익단체의 고위임원 등</p>
<p>행정 및 경영관리자</p>	<p>정부기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들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관리자 3인이상)</p>	<p>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부서 관리자(국장급, 파트총괄관리)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 등</p>
<p>일반관리자</p>	<p>한사람을 넘지않는 다른 관리자의 협조와 비관리직의 보조하에 소규모 기업과 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활동을 기획, 지휘, 조정한다. (관리자 2인이하)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p>	<p>관리자가 2인 이하인 소규모 기업관리자, 기업체의 영업소, 지점 등의 소장(직원관리, 회계, 업무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수행), 통계청 지방사무소장 제외) 기업체의 영업소, 지점 등의 소장(회계업무가 제외된 직원관리, 업무관리 등 제한적인 관리업무 수행)</p>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1. 전문가		
과학전문가	통상적인 학자개념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 해당 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 개선, 개발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기상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식물학자, 세균학자, 생리학자, 약학자, 농경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등
컴퓨터관련 전문가	컴퓨터 및 통신·인터넷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유지	컴퓨터시스템 설계가 및 분석가,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정보보호전문가, 정보시스템관리인, 웹마스터, 웹디자이너, 시스템프로그래머, 게임프로그래머, 각종 응용프로그래머
공학전문가	토목, 기계공학 등 공학분야의 연구, 개선, 개발 및 관련지식 응용	건물건축가, 조경건축가, 도시설계가, 토목·전기·통신·반도체기술자, 자동차 및 석유화학기술자, 음식료품기술자, 섬유기술자, 화장품기술자, 재료기술자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의 진료, 간호, 장애 치료 및 영양기법의 연구, 개선 및 개발	전문의사, 일반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사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영양사, 급식관리영양사
교육 전문가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체를 가르치고 해당 분야의 연구, 개선 및 개발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 교사, 직업훈련기관 강사, 정부연수기관 강사, 기업체연수기관 강사, 임시학원 강사, 고시학원 강사, 영어학원 강사, 컴퓨터학원 강사, 음악학원 강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행정, 경영 및 재정전문가	행정, 회계 및 재정분석, 노사관계,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지식의 활용과 이에 대한 이론, 운영방법 등의 연구, 개선 및 개발	정부정책 기획전문가, 정부집행전문가, 기업경영전문가, 인사행정전문가, 회계관리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증권전문가, 금융상품개발전문가, 보험계리인, 조사분석가, 경영지도·진단전문가, 관세사 등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	법률문제 연구, 사건 기소·변론 및 판결 관련수혜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목표 달성을 위한 종교의례·의식거행	검사, 변호사, 판사, 변리사, 법무사, 공증인, 사회복지전문가, 사회서비스전문가, 목사, 신부, 스님, 선교사, 포교사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기록물관리, 소장품의 체계적인 정리 및 전시 문학, 미술 등 예술작품 창작, 영화, 연극에서의 연기 및 감독	기록보관원, 박물관관리인, 큐레이터, 사서, 소설가, 시인, 극작가, 수필가, 번역가, 통역가, 기자, 작곡가, 작사가, 해설가, 조각가, 화가, 상업미술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가수, 배우, 텔런트, 성우, 아나운서, 캐스터, 개그맨, 무용가, 국악인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생물학 및 사회과학 등에서 개념, 운영기법의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수행 의료, 경영, 상품거래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 및 스포츠 활동 수행	수학준전문가, 통계 준전문가, 물리학기술공, 화학기술공, 생물학기술공, 농경기술공, 임업기술공, 농업자문가, 영림자문가, 사회분석 연구보조원 (제외) 통계사무원(3)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p>컴퓨터와 주변장치 통제 및 조작</p> <p>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작성</p>	<p>컴퓨터운영원, 컴퓨터프로그래밍작성 준전문가, 소프트웨어 설치원, 컴퓨터 테이블장치(큰술)조작원, 컴퓨터 주변장치 조작원, 산업용 로봇 조종원</p>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p>건축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 수행</p> <p>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운행 및 제품의 안전성 검사 수행</p>	<p>건설토목기술공, 토목건축기술공, 측량기술공, 전기설비감리기술공, 통신기술공, 컴퓨터설계기술공, 전자장비기술공, 기계제도사, 건축제도사, 사진가, 사진기자, 촬영기사, 무선통신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항해사, 항공기 조종사, 항법사, 건물검사원, 환경영향평가원, 생산공학기술공</p>
보건의료 준전문가	<p>의료진료 전문가를 보조하여 제한적인 간호업무 수행</p> <p>응급구조에 따른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 수행</p>	<p>보건진료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안경사, 위생사, 안마사, 전통의료치료사, 신앙치료사, 침사, 접골사</p> <p>제외) 간병인(4), 환자운반원(4), 응급구조대(4), 위생검사 공무원(2)</p>
교육 준전문가	<p>다양한 교육수준에서 정규교육 광 보조 및 실기 지도</p>	<p>대학실험조교, 초등학교·중등학교보조교사, 가정학원 강사(꽃꽂이, 요리), 기술학원 강사(자동차정비학원, 이미용학원), 사무학원강사, 보습학원강사, 응변학원강사, 학습지 방문교사, 자동차 운전교관</p>

대분류	내용 설명	예시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직업상담, 금융, 판매 및 상품증가에 관련된 실제 적·기술적 업무 수행	외환중개인,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인, 부동산중개인, 자동차판매원, 구매대리인, 감정사, 경매사, 물류관리사, 연예인매니저, 이벤트대리인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관련 수혜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정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지도, 종교 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 및 전파	아동복지 상담원, 부녀자 복지 상담원, 생활지도원, 사회서비스 준전문가, 전 도사, 수사, 수녀 (선교사 제외)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업소 등에서 음악, 무용 등 공연, 운동경기 참여 및 경 기훈련 지휘	밴드마스터, 악사, 밤무대 가수 및 무용수, 백댄서, 거 리초상화가, 대중업소 연예 사회자, 대역 배우, 직업운 동선수, 바둑기사, 경기감독, 경기심판, 에어로빅강사, 태 권도 사범, 광대, 곡예사, 동 물조련사
기타 준전문가	관리자의 지휘하에 단위의 장 지원, 법률·의료기록 등의 작성·검토, 제한적 인 관리활동을 하며, 관세, 조세, 사회보장에 관련된 승인신청 허가 및 검사	관리비서, 속기사, 정부기관 출장소장, 정부기관 사무 소 관리과장, 특허사무원, 집달관, 법무사무원, 변호 사사무원, 세무공무원, 사 회보장공무원, 허가공무 원, 병무공무원, 위생검사 공무원, 선거공무원
3. 사무 종사자		
일반사무관련 종사자	사업체내 각종 문서 및 직원 인사관리, 관리자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업계 획 입안, 홍보 및 판매· 회계사무 수행, 생산, 운송 등의 사무 수행,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총무, 인사, 기획사무원, 홍보사무원, 회계통계자료 집계 사무원, 일반사무 보조원, 검수사무원, 자재 수급사무원, 도서대출사 무원, 자료처리심사 사무원, 인쇄교정원, 대서사무원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금전취급 활동, 여행알선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접 수 등 고객과 직접 거래 하는 업무 수행.	대금수납사무원, 대표사 무원, 은행출납, 외환취 급사무원, 수금원, 복권 판매원, 마권발매원, 방송 안내 사무원, 전화교환원, 전화번호 안내원, 여행사 무원, 호텔접수원, 병원 접수원, 고객상담원, 안내 장 및 고지서발송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가정 및 시설에서 어린이 보육 및 보호업무 수행 이미용, 장의, 오락 및 여 가서비스 제공	가정보육사, 시설보조보 육사, 간병인, 산후조리종 사원, 치료사 보조원, 환 자운반원, 약사보조원, 수 의사보조원, 이용사, 미 용사, 피부관리사, 욕실 종사원, 화장사, 분장사, 코디네이터, 놀이기구종 사원, 레크레이션지도자, 결혼상담원, 예식종사원, 점술가, 무당, 운명철학자
조리 및 음식서비 스 종사자	사업체 · 시설 · 가정 · 선 박 또는 여객열차에서 음 식 조리 및 제공	주방장, 음식점조리사 병 원조리사, 열차식당조리사, 주류서비스종사원, 바텐더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항공기, 열차, 선박, 버스 등 차량에 의한 여행과 관련서비스 제공 개인 · 단체 · 외국인의 국 내외 여행안내	선박 · 항공기 · 열차승무원, 국내여행안내원, 관광안 내원, 등산안내원, 국외 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 내원, 낚시안내원
보안서비스 종사자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 질서유지 및 법률과 규정 을 이행토록 조치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 조대, 기업체 소방원, 교 도관, 보도관, 청원경찰, 안전순찰원, 인명구조원, 경호원, 수렵감시원, 장 내질서 유지원 제외) 구급요원(2)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5. 판매종사자		
도소매 판매 종사자	도·소매 상점이나 유사 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 공장소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	도매판매원, 소매업체 판 매원, 주유원, 소매 방문 판매원, 보험모집인, 노 점판매원
통신 판매 종사자	전화주문에 의하여 상품 판매 이동전화, 호출 등의 통신 설비 판매 통신설비 및 서비스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재판매	전화통신 판매원, 이동전화 판매원, 별정통신 판매원
모델 및 홍보 종사자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 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 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 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홍보활동 수행	패션모델, 의류진열모델, 예술모델, 광고모델, 상 품홍보원, 나레이터모델, 행사도우미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농업 숙련 종사자	정기적으로 전답작물·과 수작물재배 동물의 번식·사육 및 축 산물 생산 포유류·조류 및 파충류 수렵	곡식작물, 특용작물, 채 소, 과수작물 재배자, 정 원사, 원예사, 육묘재배 자, 버섯재배자, 복합작 물재배자, 낙농품생산자, 가축사육자, 가금사육자, 양봉가, 양잠가, 동물부 화자, 동물감별사
임업 숙련 종사자	수목을 조성하고 보호하 는 등 영림·산림을 보존 하는 업무 수행	조림원, 영림원, 벌목원, 임산물채취원, 임업용식물 증식원, 목탄굽기원
어업 숙련 종사자	물고기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	물고기양식원, 굴양식원, 해조류양식원, 내수면어부, 연안어부, 해녀, 원양어부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예 시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추출 및 건설기능 종사자	<p>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 나 채석장에서 고품광물 채굴 및 채취</p> <p>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 재의 성형·완성</p> <p>건물 및 기타 구조물 등 의 건설, 유지</p>	<p>광원, 채석원, 염전원, 점 화원, 발파원, 석재선별 원, 석재절단원 및 재단 원, 보도블럭 설치원, 조 립콘크리트 설치원, 거푸 짐설치원, 철근원, 건축 목공, 타일부착원, 건물 보수원, 미장원, 단열원, 배관원, 건축물전기원, 건물도장원, 도배원, 배 관청결원, 병충해 방역원</p>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p>금속주조, 용접, 단조 및 기타 방법으로 성형</p> <p>중금속 구조물의 건립, 유 지 및 수리</p>	<p>금속모형 제조원, 주형 원, 금속주입원, 용접원, 절단원, 철물설치원, 샷 시 제작원, 구난잠수요 원, 수중작업원, 단조원, 금속성형원, 대장원, 자 물쇠 조립원, 총기원, 톱 날연삭원, 금속세척원</p>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p>기관, 차량, 전기 및 전자 장비를 포함한 기계설치, 유지 및 정비업무 수행</p>	<p>자동차기관 정비원, 자동 차 경정비원, 이륜자동차 정비원, 특수차량정비원,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정 비원, 전동차량 정비원, 농기계설치 및 정비원, 광산기계설치 및 정비원, 건설기계설치 및 정비원, 전기냉난방장치 설비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원, 신 호장비 설치원, 컴퓨터설 치원, 인터넷전용회선 가 설원</p>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정밀기기, 악기,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하여 장신구·귀금속 제품, 자기·도자기 및 유리제품 등의 각종 제품을 제조, 수리	시계 제조 및 수리원, 정밀기구 제조 및 수리원, 광학기구 제조 및 수리원, 악기제조 및 수리원, 악기조율사, 보석세공원, 유리가공원, 유리장식원, 종이공예원, 석공예원, 목공예원, 인쇄조판원, 사진식자원, 인쇄제판원, 사진처리원 등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농업 및 수산업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소비용의 식품과 각종 제품 가공처리 목재 섬유, 모피, 가죽 등으로 제품 제조 및 수리	도살원 절육원 염장원, 수산물가공원, 제빵제과원, 떡제조원, 두부제조원, 장류제조원, 바구니세공원, 등기구제조원, 양복·양장제조원, 재봉원, 의복수선원, 제화원, 구두수선원
8.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종사자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자동화된 조립라인과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가공용 산업장치 및 상하수 처리, 전력발전 및 기타 목적용의 산업장치 조작	채광장치조작원, 금속용광로조작원, 제련로조작원, 금속용해로 조작원, 압연기조작원, 주조기조작원, 금속열처리조작원, 화학물가공장치조작, 화학섬유생산기 조작원, 비료제조기 조작원, 발전장치조작원, 보일러조작원, 정수장치 조작원, 소각장치 및 하수처리장치 조작원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한 지점 또는 원격조정을 통하여 산업용 기계조작	기계공구 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석재가공기 조작원,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기계조작원, 염색기조작원, 담배제조기 조작원

대분류	내용설명	예시
조립종사자	엄격하게 설정된 절차에 따라 구성부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 조립	자동차조립원, 항공기조립원, 선박기관조립원, 농업용기계조립원, 건설용기계 조립원, 기계공구 조립원, 전기장비 조립원, 금속제품 조립원, 목재제품 조립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열차,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동식 산업 및 농업용 장비 운전·조작	열차기관사, 지하철기관사, 철도신호원 및 수송원, 택시운전원, 구급차운전원, 버스운전원, 트럭운전원, 농기계운전원, 굴삭기·불도저운전원, 크레인운전원, 리프트조작원, 갑판원, 등대지기, 바지선선원
9.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청소, 경비, 계기 점검, 문서송달, 상품배달 및 수하물 운반 등의 업무 수행	가정부, 파출부, 가사소꿩대행원, 사무실청소원, 아파트청소원, 숙박시설청소원, 병원 청소원, 음식점소 청소원, 세차원, 세탁 및 다림질원, 빌딩관리원, 공동주택 관리인, 수위 및 경비원, 물품보관원, 집표원, 주차장관리원,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계기점검원, 쓰레기수거원, 구두미화원, 심부름원, 물품분류원 제외) 드라이크리닝기조작원(8), 아파트관리사무원(3), 아파트관리소장(2), 신변경호원(4), 수렵감시관(4)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예 시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 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 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영농, 영림, 어업에 관 련된 업무 수행	과수원 단순노무자, 농작 물농장 단순노무자, 과일 수확원, 목장 단순노무 자, 낙농장 단순노무자, 임업단순노무자, 어업단 순노무자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 여 제조업과 관련된 단순 하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 제품분류 및 간단한 구성 품 수동 조립	단순조립원, 수동포장원, 상표부착원, 제품운반원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 거나 상당한 육체적 노동 으로 광업, 건 및 운수업 과 관련된 단순하고 일상 적인 업무 수행	광업단순노무자, 교통정 리원, 보선 단순노무자, 토공작업원, 건물건설 단 순노무자, 잡역부, 벽돌 운반인부, 부두하역원, 육상화물 하역원, 선박하 역원, 화물운반원, 가구 운반원, 지하철 푸시맨
A. 군인		
직업군인	의무복무중인 사병은 제 외하고 장교와 직업군인 이 S하사관을 포괄	육·해·공군의 소위이 상 대장까지의 계급과 장교를제외한 준위, 장기 하사관, 단기하사관 제외) 공익근무요원, 산업 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3년이하인 하사 및 병, 사관생도
Z. 무직 및 기타 분류불능		
무직 및 기타	직업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사람	